

朝鮮朝 地方財政의 歲入構造 分析

金 玉 根*

目 次	
I. 序 言	1. 火田稅 · 蘆田稅
II. 地方官制 및 地方財政의 概觀	2. 地方稅雜稅
1. 地方官制의 개관	3. 大同稅의 移給(儲置米)
2. 地方財政의 개관	4. 復戶結
III. 歲入構造	5. 鄉吏田
1. 土地收入	6. 戶 役
(1) 直營地耕作收入	7. 身 役
(2) 結 役	8. 還穀利子
7. 民田收租地(衙祿 · 公須 田稅)	9. 雜 稅
	IV. 結 言

I. 序 言

朝鮮時代에 있어서 地方公共機關으로는 監營 · 郡縣을 주체로 하는 地方行政官府와 營鎮을 주체로 하는 地方軍事官府 및 驛 · 院 · 站 · 津 · 渡를 주체로 하는 交通官府 등이 있다. 本稿에서는 地方組織의 中樞가 되는 牧 · 府 · 郡 · 縣의 歲入構造의 分析을 試圖한 것이다.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① 王朝實錄을 비롯한 年代記史書와 그 밖에 財政關係史料에 의거하여 분석하였고, ② 地方軍事 · 交通官府의 財政에 관한 部門은 州縣財政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에 한하여 다루었다. ③ 年代的으로는 임진란 이후의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말엽의 地方財政實態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④ 地方財政의 收入을 첫째, 稅役별로 ⑦ 土地收入(結役) ⑧ 戶役 ⑨ 身役 ⑩ 雜稅로 구분하

* 釜山產業大學 教授

며 鮮初로 부터 稅役의 變化과정을 살피면서 各 官(郡縣)의 稅役別 稅收規模, 收稅物의 內容, 稅役의 주요 用途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 다음으로 조선후기의 地方財政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各 官 還耗收入에 대해서도 그 규모와 用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結言에서는 전국 330여 郡縣 가운데 7개 郡縣을 추출하여 郡縣別 歲入規模를 추계하고, 稅役別構成費와 特性을 분석하였다.

II. 地方官制 및 地方財政의 概觀

1. 地方官制의 개관

地方財政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朝鮮朝의 地方官制를 일별해 본다. 조선 시대에는 全國을 8도로 나누어 각 道에 觀察使(監司·方伯·道伯·道臣)를 두어一般行政·軍政·財政 및 刑政을 통할케 하고, 관찰사말에 郡縣(府·大都護府·牧都護府·郡縣)을 두어 府尹·大都護府使·牧使·府使·郡守·縣令·縣監등의 守令(外官職)을 파견하여 관찰사의 指揮監督下에 郡縣의 行政을 담당케 하였다. 위와 같은 郡邑과 守令의 差等은 地域의 廣狹, 人口의 多寡, 聚落의 大小, 產出量의 多少 및 地域의 特殊性을 집자하여 지어진 것이다. 太宗 13年 현재 334개 달했던 이들 郡縣의 下部에는 自治的 末端組織으로서 面(혹은 村·社)이 있고, 그 밑에는 里(혹은 村洞)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수도인 漢城府와 도읍지인 開城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中央直轄府로 하여 京官職을 두었으며, 후기에 이르러서는 廣州·江華·水原도 王都와 가까운 要衝地를 관할하는 地方官府라 하여 京官職을 두어 中央直轄로 하였다.

觀察使는 道內의 行政·司法·軍事의 諸政을 장악하여 境內郡縣의 守令을 통할 할 뿐 아니라, 兵使·水使를 겸하며 또한 監營所在地의 府尹이나 牧使를 겸하게 됨으로써 그 권한이 막강하였다. 관찰사의 地方行政을 보좌하기 위하여 中央에서 파견하는 관원으로서 經歷·都事·判官등이 있었다.¹⁾

地方鄉校 校生의 지도를 위하여 府牧에는 教授(從 6品), 郡·縣에는 訓導(從 9品)를 두었으며, 또한 外國語通譯要員을 양성하기 위하여 釜山浦와 濟浦에는 倭學訓導, 平壤과 義州에는 譯學訓導를 두었다. 이들 訓導는 모두 無祿官이었다.

이밖에 地方行政官으로서 交通行政을 담당하는 察訪(從 6品), 驛丞(從 9品), 渡丞(從 9品)이 있었다.

監營이나 郡縣을 中央官制를 그대로 빼다시 更·戶·禮·刑·工의 6房으로 나누

1) 韓國史 近世前期篇「慶擅學會」p. 199~200 참조

어 土着의 吏屬으로 하여금 6房의 사무를 分掌케 하였다. 이들은 衛前이라고 별칭 되기도 하였고 또는 胥吏 등으로 불리지기도 하였다. 衛前은 鄉吏와 그 下役인 假吏(또는 書員이라 별칭함)로 구별되었다. 그러나 郡縣에 있어서 吏·戶·刑房의 사무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首吏格인 鄉吏를 三公兄이라 하며 특히 戶房의 首吏인 戶長은 관하의 民戶를 통할하고 官奴婢, 官用의 柴炭, 生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守令이 부재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守令은 行政·軍事·司法警察權을 함께 장악하고 있으므로 그를 보좌하는 行政의 屬僚로서 鄉吏가 있고, 軍事나 경찰의 속료로서 軍校·使令 등이 있다. 軍校는 軍官과 捕校를 지칭하는 것이며, 전자는 군사적 사무를, 후자는 경찰관계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 軍校의 업무를 집행하는 賤役의 下僚에 使令이 있으며, 이를 皂隸 日守 羅將 軍奴 등으로 별칭하였다. 이밖에 地方官府의 公役과 守令의 公·私生活에 使役되는 官奴 官婢가 있으며, 官奴에는 驅從 房子 及唱 庫直 등이 있고 官婢에는 妓生 水汲 등이 있었다. 그리고 守令의 주변에 있으면서 부름(呼召)이나 사환(使喚)에 응하는 吏胥나 公賤出身의 年少者인 通引이 있었다.²⁾

효과적인 통치를 기하기 위하여 郡縣에는 鄉廳이라는 자치기구를 두고 土着의 有力者인 鄉班을 鄉任(혹은 監官·鄉正이라 별칭함)에 任用하였다. 그 기능은 향리의 惡弊를 막고 守令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는 것이었다. 2명 내지 4명으로 구성되는 鄉任 가운데 그 우두머리를 座首, 차석을 別監이라 불렀다. 이 향청도 6房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地方軍事組織을 개관해보면, 地方行政官府의 長(監司·守令)이 軍政權을 장악하고 있으나 地方行政組織과 軍事組織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었고, 地方軍事制度로서의 鎮管體制는 行政體制보다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조선조의 鎮管組織은 누차의 改編을 거듭한 끝에 世祖期에 이르러 그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鎮管組織의 經國大典에 明示되어 있는데, 該典 兵典에 따르면 각 道의 軍事官府로는 主鎮 巨鎮 諸鎮이 있다. 主鎮은 兵馬節度使(兵使)와 水軍節度使(水使)의 所在地에 두고, 그 밑에 수 개의 巨鎮을 두어 節制使 僉節制使가 각각 관장도록 하였다. 이 巨鎮을 鎮管으로 하여 그 밑에 여러개의 諸鎮을 두어 同僉節制使 萬戶 節制都尉로 하여금 관장도록 하였다.

각 道에는 兵使 水使를 각각 1명 내지 3명씩 두었는데, 1명일 경우에는 관찰사가 兵使와 水使를 모두 겸직하였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관찰사가 겸직하고 나머지 1명은 專任의 兵使 및 水使를 두었다. 兵使 水使 밑에는 그 副職으로서

2)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p. 61~62 참조

虞候(兵馬虞候 水軍虞候) 또는 中軍을 두었다. 節制使는 府尹級(正3品)의 巨鎮에 두어 府尹이 兵馬節制使를 겸하였다.³⁾ 僉節制使(從3品)는 大都獲府使 牧使 府尹級의 巨鎮에 두었다.⁴⁾ 節制使 僉節制使가 주관하는 巨鎮의 鎮管 관할아래 여러개의 諸鎮을 소속시켜 同僉節制使 萬戶 節制都尉 權管 등으로 하여금 관장케 하였다. 그리고 陸軍의 경우 대개 守令이 軍職을 兼帶하였다. 즉 陸軍의 경우 主鎮의 節制使 僉節制使 巨鎮의 同僉節制使는 모두 守令이 겸대하고 諸鎮의 節制都尉는 대개 守令이 겸대하였으나 巨邑에 있어서는 判官이 兼帶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水軍에 있어서는 巨鎮의 僉節制使(僉使)와 諸鎮의 萬戶는 거개가 전임의 武官職으로 임명되었다.

이밖에 地方財政의 대상이 되는 驛院 渡津 등의 交通機關이 있으나 설명을 생략한다.

2. 地方財政의 개관

朝鮮朝의 地方財政도 中央財政과 같이 主要收入源을 小規模經營의 自給的 生產을 특징으로 하는 封建農民으로부터 획득하는 地代=祖稅에 두었다. 財政收入의 원천이 기본적으로 小農經營의 내부에서 실현되는 剩餘生產物 또는 剩餘 労動이라고 하더라도 그 收取樣式에는 여러가지 形式이 있고 또한 그것이 시대의 추이와 더불어 变해 갔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地方財政의 收入을 種目別로 분류하면 (1) 土地收入 (2) 貢物 (3) 力役 (4) 雜稅 (5) 還穀利子 등으로 나누어진다. (1)의 土地收入에는 官屯田과 같은 直營地收入(임란후 官屯田의 經營方式이 小作制로 전환함에 따라 屯稅라고 일컫는 小作料로 변화함)과 衙祿·公須田과 같은 公田=民田에 대한 結稅(田稅 大同稅 등) 收入이 있고, (2)의 貢物에 있어서 地方官府의 收入이 되는 부분은 地方貢物 또는 鄉貢이라고 부르는 營邑의 需用을 위한 雉·鷄·柴·炭·冰 등으로 구성되는 本色貢物이다. 이 地方貢物은 本色貢納制를 철폐하는 후기의 財政改革(大同法實施)에도 제외되어 甲午改革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3)의 力役에는 徭役(부역)과 身役이 있으며, 地方官府에 提供하는 徭役도 中央官府에 대한 徭役과 더불어 大同에吸收되어 地稅化(結役化)되었고, 地方官府에 배정된 軍役과 定役의 身役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義務的 立役制 대신 物納制(布·錢·穀納)로 变천해 갔다. 이 결과 17세기 이후 身役收入이 地方財政의

3) 水軍節制使는 濟州에만 있고 濟州牧使가 이를 겸직하였다.

4) 陸水軍의 獨鎮과 그 鎮管에는 전문적인 武官職으로서의 僉節制使가 배치되었는데 이를 僉使라 略稱하였다.

歲入構造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4)의 地方官府가 획득하는 雜稅에는 場市稅 巫稅 匠稅 店稅 海稅什一條, 寺稅 등이 있다. (5)의 還穀利子에는 地方官府에서 설치한 還穀의 利子收入과 京司穀의 利子(耗穀)의 일부를 이금(交附) 받으므로써 얻게 되는 收入이 있다.

鮮朝中期 이후 中央財政과 더불어 地方財政도 크게 變容하였다. 17세기에 大同法을 중심으로 하는 財政改革으로 地方財政이 大同稅(儲置米)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軍役·定役의 身貢收入과 還耗收入이 地方費의 새로운 財源으로 등장하였고 또한 財政危機가 末期的 症狀을 띠고 擴大深化된 18세기 아래로 科外雜稅의 수탈이 歲加月增해 갔다.

地方財政의 支出構造를 일별해 보면 朝鮮前後기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것으로 보이나, 後期 大同法下의 地方費를 費目別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人件費(地方官의 俸祿, 軍兵의 月料 기타 勞務費)
- ② 官衙修築費
- ③ 物件費(紙筆墨 등의 事務用品, 官用米·鹽·醬·油·清·蜜·雉·鶴·柴·炭·藁草·冰丁·藥材·기타 雜物調達費)
- ④ 祭祀費(鄉校春秋祭享, 山川祭 기타 地方官에서 거행하는 祭祀)
- ⑤ 運輸交通費(刷馬價 등)
- ⑥ 官船建造·修理費
- ⑦ 軍事費(軍器·兵船·軍糧 등)
- ⑧ 醫療費
- ⑨ 教育費
- ⑩ 進上物의 調達上納費
- ⑪ 기타 雜費

조선후기의 地方財政의 支出費目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것이나, 歲入構造를 분석하는 대목에서 經費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이다.

III. 歲入構造

1. 土地收入

米布 중심의 現物財政을 운영한 조선왕조는 그 초기에 있어서는 모든 公共機關에 대하여 民田의 收租權 또는 官有地(官田)를 分給하여 財源을 조달케 하였다. 이러한 經費自辨의 方法을 채택한 이유는 당시의 財政收支手段인 米·布의 出納, 輸送에 수반하는 煩雜을 피하고 財政運營의 便宜를 도모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선

초에 中央官府에 지급한 各司公廨田⁵⁾은 世宗 연간에 그 대부분이 폐지되고, 各司 경費를 國庫에서 支給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郡縣을 비롯한 地方公共機關에 지급한 土地는 18세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1) 直營地耕作收入

郡縣에 회급한 土地로는 衙祿·公須田 이외에 官屯田이 있다. 衙祿·公須田이 民田收租地인데 대해서 官屯田은 官有地로서 당해 官府에서 耕作權을 가지고 직접 경영하는 自耕無稅地이다. 官屯田은 地方行政官府뿐만 아니고 地方交通官府(各驛) 軍事官府)營鎮)에도 지급되었으나 여기서는 주로 行政官府의 官屯田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官屯田은 鮮初에 改廢를 거듭한 끝에 世祖 연간에 최종 정비를 보게 되었는데 經國大典에 수록된 官屯田規定은 이때에 마련된 것이다. 世祖 9年 6月에 州縣屯田과 各鎮屯田의 結數와 그 용도를 규정하여, 公須·衙祿은 문론이고 官廨의 修理使客支待 兵器 仆物 民間未備貢物에 이르기까지 官屯田收入으로 支辨한다고 밝히고 있다.⁶⁾ 또한 世祖實錄 卷 37, 11年 11月 辛亥 條에는 州縣屯田은 各官人吏와 官奴의 노동으로 경작하여 公共經費에 충당하고 各 鎮屯田은 當番軍兵의 노동으로 경작하여 경비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⁷⁾ 그리고 大典 官屯田項에는 府·大都護府·牧에 20結 都護府·郡에 16結 縣에 12結을 각각 지급하고, 이 數內官屯田은 官奴婢 또는 人吏(鄉吏)의 노동으로 경작하고 定限結數를 초과하는 數外官屯田과 屬公田은 貧民에게 노나주어 收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⁸⁾ 大典에는 官屯田耕作에 民丁의 징발·사역을 금하고 있으나, 실지에 있어서 民丁使役의 폐해가 근절되지 않았다.⁹⁾ 조선전기에 地方公共機關의 直營地였던 官屯田이 임란 후에는 經營方式을 小作制로 바꾸어 民田의 小作慣例에 따라 수확량의 약 1/2에 달하는 小作料

5) 各司公廨田은 民田收租權을 이유한 土地로서 그 收入으로 各司의 事務用品, 床子, 燈油燃料(柴炬炭) 및 官員의 畫食費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土地이다.

各衙門公廨所需 即公事紙地·舖陳·燈油·柴炬炭
(礪溪隨錄 祿制)

6) 大典內 留守·府·牧·大都護府屯田各二十結 都護府·郡十六結 縣十二結 節制使·處置使·營十二結 僉節制使·都萬戶營十六結 萬戶營十結 非唯公須衙祿 至於官廨修葺 使客支待 軍官供給·兵器·什物等項 一應調度 民間未備貢物 皆用屯田所出補之 詳定之意至矣
(世祖實錄 卷 30, 9年 6月 癸亥)

7) 大典內屯田條 留守府 牧官 大都護府各二十結 知官各十六結 縣官十二結 令人吏官奴耕種 以補公需衙祿 節制使·處置使營二十結 僉節制使·都萬戶營十五結 萬戶營十結 並以當番軍人耕種 其本意 則一應官家調度·及民間未備貢物 亦以此支用
(世祖實錄 卷 37, 11年 11月 辛亥戶曹啓)

8) 經國大典 戶典 諸田 條

9) 平安道諸邑守令 今皆役民 耕治屯田 又春米 民甚若之
(成宗實錄 卷 260, 22年 12月 乙卯)

(屯稅)를 취득하였다. 조선후기에 官屯田의 經營樣式이 小作制로 轉換하게 된 것은 이 시기에 公田=民田에 있어서 分半小作制가 일반화되었고 또한 임란후 널리 설정된 中央官府(各營·衙門)의 屯田과 宮房田이 小作制로 경작된 사회적 과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란후 田制紊亂과 宮庄土의 擴張過程에 많은 官屯田이 宮房을 위시한 權豪들에 의하여 侵奪되었다.

(2) 結役

ㄱ. 民田收租地(衙祿·公須田稅)

地方行政官府인 郡縣에 分給된 토지에는 廉田과 官屯田이 있다. 이 양자는 生產關係에 차이가 있으며, 高麗朝의 州縣公廨田에 해당하는 廉田은 國家에서 公田收租權을 당해 官府에 이양한 土地이므로 大典諸田條에各自收稅地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官屯田은 公田經營權이 地方官府에 주어진 自耕無稅의 直營地이다. (後述)

外官의 祿俸財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정한 衙祿田에 대해 大典諸田條에 大邑(府 大都護府 牧 都護府)에는 각 50結, 小邑(郡縣)에는 40結씩을 회급하되 判官이 있는 大邑에는 40結을 加給하며, 未挈家(家族을 同伴하지 않게 되어 있는 國境 또는 海岸沿邊州縣의 守令)에는 半額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¹⁰⁾ 조선전기에 全國의 衙祿田은 약 2萬結이다.¹¹⁾

使客支待費와 公共經費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정한 公須田의 지급 결수는 한 군현에 15結을 원칙으로 하고, 賓客의 왕래가 많은 大路를 건 郡縣에는 10結을 加給하고, 中路에는 5結을 加給하였다.¹²⁾ 世宗 27年의 公廨田改革 당시에 전국의 公須田은 大路 24邑에 600結, 中路 75邑에 1,500結, 小路 166邑에 2490結로 도합 4590結이 있었다.¹³⁾ 전기애 있어서 公須田의 總收稅額은 약 1萬石, 衙祿田의 그것은 약 4萬石으로 추정된다.¹⁴⁾

土地에 부과하는 結役이 田稅밖에 없었던 전기애 있어서는 각 郡縣에서는 衙祿田과 公須田에 結當 최고 20斗의 田稅를 收稅하여 公共經費를 支辨하였으나, 田稅가 結當 4斗~6斗로 감소되는 반면에 1結에 평균 12斗에 달하는 大同稅를 비롯한

10) 府·大都護府·牧各衙祿十五結(有判官 則加四十結 都護府同 未挈家處 則減半 都護府郡縣同)
(經國大典 戶典 諸田 條)

11) 世宗實錄 8年 6月 辛未

12) 經國大典 戶典 諸田 條

13) 千寬宇, 韓國土地制度史 下「韓國文化史大系 所收」p. 1645

14) ⑦ 大槻衙祿之田二萬結 而其所收則四萬石

(世宗實錄 卷 32, 8年 6月 辛未)

↪ 金玉根, 韓國土地制度史研究 p. 354

여러가지 稅目의 結稅가 부과된 후기에 있어서는 衙祿·公須田을 免稅出賦로 하며 田稅만 면제하고 大同稅는 國庫에 바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廉田에 대한 地方官府의 收稅額은 結當 최고 20斗에서 4~6斗로 감소된 셈이다. 廉田을 免稅出賦地로 한 이유는 大同法下에 外官祿俸과 使客支供費를 비롯한 地方費의 대부분을 大同稅(儲置米)에서 劃給해 주었기 때문이다.¹⁵⁾

朝鮮前期에 있어서 地方官府(郡縣)의 主要收入源을 위에서 살펴본 衙祿公須田의 民田收稅와 官田으로서의 官屯田經營收入이었다. 大邑의 경우 衙祿田 90結, 公須田 25結에서 얻는 최고 收稅額 154石(米)과 官屯田 20結에서 얻는 收獲量 200石(米) 합계 354石(米)이다. 小邑의 경우는 衙祿田 40結, 公須田 25結의 收稅額 약 87石과 12結의 官屯田耕作收入 약 120石 합계 207石(米)정도이다.¹⁶⁾

L. 火田稅·蘆田稅

火田稅와 蘆田稅도 結役 즉 結稅에 속한다. 一定한 기간을 두고 定期的으로 경작과 休耕을 反復하는 火田은 田案에 올려 火田稅를 부과하여 國庫收入으로 하지만, 5년 또는 10년에 걸쳐 장기간 休耕을 계속하다가 2~3年동안 不定期的으로 경작하는 數外火田(隨起收稅地)은 田案에 등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稅를 地方官(郡縣)의 收入으로 하였다. 그리고 蘆草를 수확하는 蘆田에는 蘆稅를 부과하였는데, 이 土地도 火田과 같이 田案에 올린 것은 그 稅를 國庫에 바치나, 田案에 올리지 않은 數外蘆田의 稅는 地方官의 收入으로 하였다.

〈表·1〉을 正祖 18년에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賦役實攢에서 전국 22개 군현을 추출하여 火田稅收稅實績을 作表한 것이다. 表에서 보듯이 火田稅의 稅物은 貨幣(錢貨)·木綿·小米에서 콩·조·小豆·菉豆·直莊·木麥 등의 잡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稅率도 통일되지 않고 地域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忠淸道의 경우 禮山縣에는 火田 1結의 收稅額이 콩 1石 7斗 6升 6合 7夕이고 靑陽縣은 콩 4石 10斗, 定山縣은 콩 2石 10斗로 郡邑마다 稅率이 다르다. 각 郡縣의 火田稅의 規模는 一定하지는 않으나, 火田이 많은 山郡일수록 그 규모가 크다. 義城縣의 경우 火田稅는 쌀로 환산하여 약 1천石에 달하며, 平安道各官은 쌀 5백石을 웃돌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군현에서는 火田稅가 官屯田과 衙祿公須田의 收入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火田稅는 경작하는 年度에만 징세하기 때문에 納稅者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臨時稅이지만 戸曹나 郡縣과 같은 收稅者的 입장에서

15) 大同行後 既定營官需 而衙祿公須位 仍舊免稅 只收大同
(續大典 戶典 諸田 條)

16) 衙祿田 公須田의 民田收稅地에 대해서는 結當 稅額을 全實의 稅額을 쌀 20斗로 계산하였고, 官府直營地인 官屯田은 1結의 平均收獲量을 쌀 10石으로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表·1>

各官火田稅收稅表

正祖 18年

慶 尚 道	忠 清 道
草溪 59兩 3錢 7分 清道 51·2·0 咸陽 323·2·0 永川 342·3·5 盈德 太 35石 小豆 5石 菽豆 4石 粟 30石 水莊 2石 義城 粟 721石 真莊 20石 9斗 木 3同 24疋 20尺 錢 1,048兩 2錢 榮州 粟 170石 9斗 ※ 餘他各官省略	禮山 太 9石 4斗 4升(每結太 1石 7斗 6升 6合 7夕收稅) 木麥 9石 5斗(每結木麥 1石 7斗 7升 6合 4夕 3利收稅) 鴻山 租(皮穀) 64石(火田 48結 每結 5石 5斗收稅) 扶餘 123兩 3錢 1分(火田 22結 42負每結 5兩 5錢收稅) 青陽 太 204石 4升(火田 43結 72負每結太 4石 10斗收稅) 定山 太 30石 2斗(火田 41結 30負 每結太 2石 10斗收稅) ※ 餘他各官省略
平 安 道	黃 海 道
雲山 小米 574石 13斗 5升 价川 小米 500石 木米 28石 直莊 28石 小豆 24石 順川 小米 479石 7斗 1升 太 60石 小豆 30石 菽豆 10石 木米 10石 芝草 2石 1斗 1升 渭原 小米 933石 6斗 5升 ※ 餘他各官省略	鳳山 小米 145石 3斗 遂安 小米 285石 10斗 6升 2合 5夕 載寧 1,429兩 2分 ※ 餘他各官省略
全 羅 道	
潭陽 242兩 8錢 2分 長城 218兩 2錢 6分 淳昌 120兩 ※ 餘他各官省略	

資料：賦役實據

는 每年 들어오는 經常收入에 속한다.

二. 地方稅雜稅

土地에 부과하는 結稅(結役)에는 國稅에 속하는 것으로서 田稅 大同 三手米 結作 破糧米의 本稅 이외에 그 附加稅와 雜費가 있다.¹⁷⁾ 그런데 이러한 國稅 이외에 地方費(郡縣經費)의 조달을 목적으로 土地에 부과하는 地方稅로서의 雜稅가 있다. <表·2>는 大同法 실시후 18세기 말에 각 郡縣에서 結役으로서 土地에 부과한 地方雜稅를 계재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시기에 모든 郡縣에서 地方費를 稔出하기 위하여 거액의 雜稅를 土地에 부과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19세기 후기의

17) 國稅와 雜費에는 斤上 加升 倉役價 倉作紙價 貢人役價 戶曹作紙價 下船·入倉價 年分 文書紙價 浮價米 落庭米 原人情米 大同看色米 打石米 騎船監吏糧米 등이 있다.

開港期에 가까워질 수록 증대되어갔다. 土地 또는 家戶에 부과하는 地方稅雜稅가 임진란전에도 부과되고 있었던 것이나, 임란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財政權과 더불어 급속히 증대해 갔다. 그런데 17세기초기로 부터 道別로 실시되기 시작한 大同法의 規定(事目)에는 稅率을 結當 平均 12年로 책정하는 대신에 結役과 戶役을 막론하고 모든 形態의 非正規的인 地方稅雜稅를 철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大同法 실시후 封建體制의 崩壞過程에서 封建紀綱이 문란해지고 이에 수반하여 財政難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져 가는데 따라서 非正規稅로서의 각종 科外雜稅가 土地에 부과되었다.

表에 ○표를 표시한 雉·鷄·柴·炭·穀草·氷·丁·杻炮 등은 전기의 本色貢納制하여 있었던 地方貢物鄉貢에 속하는 것으로 正規稅이다. 왜냐하면 이 地方貢物은 大同法을 실시할 때 大同稅에 吸收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해두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地方貢物은 大同法 이전에는 戶役으로서 家戶에 부과하였으나, 大同法下에서는 郡縣에 따라 부과방법을 달리하여 혹은 家戶에 혹은 土地에 부과하였으며, 그 稅物도 통일되지 않고 郡縣에 따라 本色現物, 혹은 錢貨, 혹은 穀物로 징수하였다. 地方稅雜稅 가운데 地方貢物 이외의 것은 모두 稅法規定에 없는 郡縣에서 설정한 非正規稅이다. 封建紀綱이 弛緩紊亂해져감에 따라 이 부분의 雜稅가 증가해 갔다. 土地에 부과하는 地方稅의 非正規 科外雜稅는 郡縣에 따라 稅目的 명칭이나 그 用途에 차이가 있고 또한 收稅規模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表에 나타난 地方稅雜稅의 稅物은 錢貨(貨幣), 米豆를 비롯한 穀物, 柴炭杻炬 등의 燃料, 雉鷄 海產物 등의 食料品 및 기타雜物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雜稅의 用途도 多樣하나 대체 분류해보면 特定公務擔當者(營主人등)의 役價(給與), 官廳의 公務出張을 위한 刷馬價(旅費), 官用의 燃料費, 食料品費, 기타 雜費 등이다.

郡縣別 雜稅收稅規模를 보면 蔚山郡은 5,300兩 7錢 2分으로 算로 換算하면 약 883石이다. 이 가운데 正規稅에 속하는 雉鷄 穀草 氷丁價錢(稅)은 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科外雜稅이다. 揚州牧은 眞油 黃蠟을 제외한 각종 收稅物의 米換算額이 약 414石인데 該郡에서는 雉鷄 등의 地方貢物은 모두 戶役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上記收稅額은 모두가 科外雜稅이다. 江界府도 地方品物을 戶役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表에 나타난 각종 收稅物은 모두 科外雜稅이다. 이 가운데 皮柏子와 石蓆를 제외한 부분의 米換算額이 약 2,208石에 달한다. 康津縣은 結稅 1石에 收稅하는 附加稅를 제외한 雜稅總額이 약 1,004石인데 이에는 1結에 4斗씩 징수한 地方貢物價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은 약 80石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18세기말에 각 郡縣에서 地方費調達의 名分으로 土地에 부과한 地方稅雜稅가 수백石

<表・2>

各官地方稅雜稅(結役)

正祖 18年

蔚山府		康津縣	
魚果價錢		<u>全田結收稅額</u>	
油清價錢		京主人役價米 60石 營主人役價米 90石	
雜物價錢		兵營主人役價米 14戶 房廳不足米 132石	
青草價錢		進上添加米 90石 <u>기타</u> 一	
進上情錢		<u>每1結收稅額</u>	
客舍舖陳錢		雇馬祖 20斗~23斗 坊主人勸受租 2斗	
○雉鶴價錢		書員考給租 4斗 不米 9升	
○藁草價錢		○雉鶴柴炭價米 4斗	
○水丁價錢		<u>結稅每1石附加稅</u>	
禮泉郡		打石米 1石 ○雉鶴柴炭色落米 1升 6合	
松禾縣			
生豬喂養租		太 81石 4斗 3升 2合 菜豆 14石 6斗 7升 8合	
.....		木麥 14石 6斗 7升 8合	
○雉鶴錢		直麥 14石 12斗 2升 5合	
○藁草代租		○雉 44首 ○柴 4556束	
○水丁		○穀草 2, 253束 ○壯作 360束	
○燒木		○炬焯 450柄	
江西縣			
官需錢 1, 510兩		役價錢 3, 990兩	
大米 159石		直真末 27石 10斗	
小米 63石 11斗		真油 5石 8斗	
太 50石 8斗		○柴草 13, 200束	
小豆 14石 7斗		○穀草 2, 400束	
菜豆 13石 5斗		○粗炬 1, 200柄	
木麥 13石 4斗		直麥 37石 11斗	
江界府			
小米 1, 119石 9斗 5升		太 340石 3斗 9升	
刷價小米 306石 1斗		菜豆 28石 1斗 4升	
役價小米 556石 5斗		小豆 28石 1斗 4升	
皮稻草 9石 2斗 9升	 5: 7: 7:	
咸從府			
魚價錢 862兩 2錢			
官需錢 405兩 2錢 7分			
大米 121石 13斗 6升		太 7石 6斗 3升	
粘大米 17石 6斗 3升		直莊 39石 2斗 7升	
燉造 17石 6斗 3升		直末 8石 10斗 2升	
只花里 8石 10斗 2升		乾蛤 7石	
乾蛤 2石		蛤鹽 3石	
白蝦 2石		紫蝦 2石	
柴 30, 992束		○穀草 6, 611束	
青草 5, 741束		○炬子 800柄	

資料：賦役實據 卷 1, 6, 7, 11 茶山全書 經世實表 5集 7卷

에서 수千石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그 대부분이 正規稅가 아닌 科外雜稅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己. 大同稅의 移給(儲置米)

17세기 財政改革 이후의 結役 가운데 地方 財源에 充當된 稅目의 하나로서 大同稅가 있다. 임진란후 本色賣納制를 철폐하는 稅制改革으로 설정된 大同稅는 기본적으로 同稅의 성질을 띤 것이나 그 일부를 營邑을 중심으로 하는 地方官府에 지급하였다. 부연하면 大同米(大同稅)를 上納米와 儲置米(貯置米)로 구분하여, 上納米는 中央各司의 賣物購買價로서 宣惠廳(戶曹 또는 常平廳)에 바치게 하고, 儲置米는 地方費의 支辨, 大同米의 輸運費(船價), 外貢¹⁸⁾의 調達上納費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이다. 儲置米의豫算은 道單位로 大同法을 실시할 때 地方事情에 따라 마련한 大同事目 또는 詳定事目(江原·黃海·咸鏡道)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음으로 그 絶對額이나 比率 또는 費目(用途)이 一定하지 않고 地方別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表·3>은 주로 英祖 45년 統計資料에 의거하여 作成한 것인데 道別로 본 儲置米의 絶對額은 최하가 京畿道의 1만 3천여石이고 최고는 慶尙·全羅道의 각각 52만여石으로 그 총액이 249만여石이다. 大同稅에서 儲置米가 차지하는 比率에 있어서는 慶尙道의 34%가 가장 낮고 咸鏡道의 88%가 가장 높으나 전국 平均比率은 44%이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儲置米는 그 전액에 地方財源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地方費 이외에 大同米의 輸京上納費(漕運費) 및 大同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本色現物로 上納하는 外貢으로서 남게 된 일부의 物膳 方物 薦新藥材 등의 進上物資와 土產貢物의 調達上納費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儲置米 가운데 이를 上納關係費用을 공제한 나머지가 地方官府(監·兵·水營 郡縣)의 財源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다.

各官 經費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儲置米의 費目(用途)은 地域(道別·郡縣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충 정리해보면 (1) 官需米 (2) 公事紙物費 (3) 使客支供費 (4) 霹祿米 (5) 刷馬費 (6) 各官月課軍器費 (7) 水陸軍春秋習操時軍糧 (8) 祭祀費 (9) 官船改造·補修費 등 그 범위가 넓다. 이처럼 地方費를 大同稅에서 활애준 것은 地方官에 의한 科外雜稅의 수탈을 방지하려는데 있었다. 이 결과 大同法 초기에는 한동안 科外雜稅가 거의 폐지되었으나 封建體制의 動搖와 더불어

18) 大同法 실시 후에도 상당한 량의 進上과 약간의 貢物을 '종전과 같이 地方官에서 本色現物을 調達·上納토록 하였는데 이를 外貢이라 부르고, 進上·貢物을 大同米(또는 布錢)로 上納하는 부분을 京貢이라 부른다.'

〈表・3〉

大同稅의 道別收稅·上納·儲置額

英祖 45年

道名	收稅額	上納額	比率	儲置額	比率
京畿道	35,894石	22,482石	63%	13,412石	37%
江原道	34,557	10,813	30	23,744	70
忠清道	94,383	55,548	59	38,835	41
全羅道	149,800	97,718	65	52,082	35
慶尙道	151,498	99,299 (公作米包含)	66	52,199	34
黃海道	58,858	22,598 (戶曹實物價) (및 기타포함)	40	36,260	60
咸鏡道	20,235	2,395 (常平廳上納)	12	17,840	88
平安道	20,000	5,000 黃海道所納管餉 穀換錄分推定額	25	15,000	75
計	565,225石	315,853石	56%	249,372石	44%

資料：① 增補文獻備考田賦考 13, ② 貢稅要略 ③ 萬機要覽 ④ 咸鏡道內大同戊申條捧上에 의거하여 作成함.

財政危機가 擴大深化되는 과정에서 科外雜稅가 다시 再現되어 해를 거듭할 수록 증대해 갔다. 여기서 大同儲置米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支辨社 地方費의 費目에 관한며 項目別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官需米

官需米 衛祿米 使客支供米 公事紙物費는 平安·咸鏡道를 제외한 6道 각 官의 儲置米에 공통적으로 計給되고 있는 費目이다. 각 官 官需米는 官用의 食糧·鹽·醬·油·清 및 그밖의 官需雜物購入을 위하여 使用되는 것이다. 大同米에서 지급하는 이같은 官需米의 규모는 地方에 따라 다르다. 忠清道 大同事目에 따르면 道內의 각 官을 田結數를 기준으로 하여 大·中·小·殘邑 4등급으로 나누어 公山등 4개 大邑에 각각 400石, 瑞山등 6개 中邑에 각각 230石, 沃川등 30개 小邑에 각각 150Stone 黃潤등 10개 残邑에 각각 100Stone씩의 官需米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 全羅道의 官需米支給量은 大邑(7邑)에 각각 550Stone~624Stone 10斗, 中邑(14邑)에 411Stone 10斗~508Stone, 小邑(28邑)에 278Stone~568Stone, 残邑(6邑)에 171Stone 5斗~257Stone씩으로 도합 23,482Stone이다.²⁰⁾ 黃海道 각 官에는 〈表・4〉에서 보듯이 최하 185Stone에서 최고

19) 各官官需米 及油清價米 以大中小殘分爲四等 磨鍊題給 五千結以上爲大邑 三千結以上爲中邑 二千結以上爲小邑 未滿二千結爲殘邑是白齊
(忠清道大同事目)

郡邑을 分等하는 田結數는 道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全羅道의 경우는 6千 以上을 大邑, 4千結 이상을 中邑으로 하여 각 等級別田結數가 忠清道보다는 1千結이 많다.

20) 全南道大同事目

〈表·4〉 黃海道各官官俸米割給表

官各	割給額	官名	割給額
海州 黃州	각 415石	金川 谷山 文化	
延安 安岳	각 320石	松禾 股票 新溪 長淵	각 250石
平山 凤山		長連 庫翎 兔山	
瑞興 載寧			
信川 白川			
遂安	각 300石		각 185石

資料：海西廳事例

415石을 지급하고 있다.

② 衙祿米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조선전기에는 民田(公田) 收稅地 가운데 各官에 40~90結의 衙祿田을 分給하여 그 結稅(田稅)收入으로 守令의 祿俸을 지급토록 하였다. 守令의 品階는 郡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조선후기의 繢大典 祿科 규정에 따르면 從3品의 守令은 每月 穗 1石 5斗, 콩 1石 2斗의 祿俸을 받게 된다. 그런데 大同法 실시후 各官 衙祿米의 대부분을 大同米에서 지급하였다. 이를테면 正祖 중기에 京畿道 各官에 대해 衙祿米條로 한郡邑에 穗 16石~20石을 大同米에서 지급해 주었고²¹⁾ 그 밖에 여러 道에서도 祿俸財源을 大同米에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大同米에서 各官 衙祿米를 지급한 이유는 임란후 結當 4斗~6斗로 減下된 田稅收入만으로써는 祿俸財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 전액을 大同稅에서 지급해주므로써 地方財政의 궁핍을 緩和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믿는다. 이같은 이유로 衙祿米를 大同稅에서 지급해주는 대신 衙祿田에 대한 大同稅를 國家(宣惠廳)에서 收稅하고 減下된 田稅만을 종전과 같이 郡邑에서 收稅하여 地方費에 사용토록 하였다. 그런데 18세기 말에 편찬한 賦役實摠에 수록된 全國 3백여개 官의 郡邑別收稅實績 가운데 衙祿田의 田稅收入이 없는 郡縣이 상당히 많다. 이는 大同法 실시후 王朝末期에 財政難이 그 深刻度를 더해감에 따라 衙祿田이 규정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反映하는 것이다.

③ 使客支供米

使客支供米란 地方巡察을 하는 監司·中央에서 파견한 官吏등 公務旅行者를 위한 宿食費(支待費)에 使用하는 財源을 말한다. 이 費用을 大同儲置米에 計給하였는데 使客往來의 빈도에 따라 지급량이 달라지고 있다.

21) 賦役實摠 卷 1

京畿道의 경우 한 郡邑에 대한 지급량이 최하 30石에서 최고 155石에 달하고 있으나, 喬洞府를 비롯한 13郡縣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²²⁾ 慶尙道에 있어서는 〈表 5〉에서 보드시 최하가 寧海府등 24개 郡縣의 10Stone에서 최고는 교통의 요충지인 尚

〈表・5〉

慶尙道 各 官 使客支供米支給量

官名	支給量(單位: 石)
尙州	120石
大邱·善山	95
密陽	75
安東	60
慶州·星州·聞慶	각 50
清道·仁	각 45
漆谷	35
豐基·咸昌	각 30
金海·蔚山·永川·義城·固城·昌寧·榮州·陝川·梁山·新寧·義興	각 25
昌寧·咸陽·釜山·草溪·開寧·高靈·三嘉·丹城·山清	각 20
東萊·河東·居昌·昆陽·慶山·玄風·靈山·宜寧·龍宮·泗川·順興·咸安	각 15
寧海·彥陽·眞隱·機張·長鬱·清河·南海·漆原·巨濟·鎮海·熊川·河陽·安義·知禮·慈仁·比安·迎日·興海·軍威·青松·盈德·奉化·禮安	각 10 總計 1,730石

資料：嶺南廳事例(純祖年間)

〈表・6〉

黃海道 各 官 使客支供米

官名	支給量
海州	300石
黃州	360
延安·安岳	각 60
平山·風山·瑞興	각 200
載寧	70
信州·隣安·谷山	각 50
白川·豐川	각 60
全州	60
文化·松禾	각 40
殷栗	50
新溪·長連·鬼山	각 40
長淵	80
康翎	30
	計 2,440石

資料：海西廳事例 官需條

22) 金玉根著, 朝鮮後期經濟史研究 p. 91

州牧의 120石에 이르기까지 지급량에 여러 단계의 격차를 두고 있다. 黃海道의 경우도 〈表·6〉과 같이 康翎縣의 30石에서 黃州牧의 360Stone에 이르도록 여러 단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④ 公事紙價米

各官事務用紙物購入費를 公事紙價米라는 費目으로 大同儲置米에 計給해 주고 있다. 〈表·7〉은 黃海道各官의 公事紙價米의 지급량인데, 최하는 長淵縣등 6개官의 각 10Stone, 최고는 海州·黃州牧의 각 30Stone이다. 〈表·8〉은 忠淸道各官에 대한 公事紙價米의 지급량이네 각官支給量은 9Stone~12Stone으로 되어 있다.

〈表·7〉

黃海道各官公事紙價米

官名	支給額
黃州·黃州	각 30Stone
延安·安岳	각 20
平山·風山·瑞興·載寧·信川·遂安·谷山·白川·豐川·金川·文化·松木	각 15
股票·新溪·長連·兎山·長淵·康翎	각 10
	計 340Stone

資料：黃西廳事例 官需條

〈表·8〉

忠淸道各官公事紙價米

官名	支給量
忠淸·淸州·洪州·公州	각 12Stone
韓山等 8개官	각 11Stone
淸風等 33개官	각 10Stone
黃潤等 12개官	각 9Stone

資料：賦役實據 湖西

⑤ 刷馬費

刷馬費란 守令등 官吏가 出張할 때 소요되는 雇馬費와 馬夫에 대한 보수(給與)를 포함한 경비이다. 大同法 이전에는 各官刷馬費의 대부분을 民結(民田)에 課徵하여 많은 民弊를 끼쳤기 때문에 大同法을 실시할 때 各官刷馬費를 大同儲置米에 計給해 주고 刷馬費(科外雜稅)의 民結責徵을 끝하게 하였다. 그러나 大同法 실시 후 얼마 안가서 各官에서는 刷馬費를 科外雜稅의 하나로서 結役으로 징세하고, 혹은 還穀의 強制貸出에 위한 利子收入으로써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大同事目에 나타난 刷馬費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歲의 豊凶에 따라 紙價額에 차등을 두어 1息程마다 凶年에는 2斗, 中年에는 2斗5升, 豊年에는 3斗씩

을 지급한다.²³⁾ ② 大同法 실시전에는 守令의 任期滿了에 따르는 交替時(瓜滿遞易)에 迎送刷馬費를 혹은 民結에 부과하고 혹은 人吏八結²⁴⁾에 부과하여 왔으나, 大同法실시와 더불어 刷馬費를 모두 大同儲置米에 計結하기 때문에 人吏八結制를 폐지한다. ③ 守令이 交替될 때 迎送刷馬費를 모두 各官 儲置米에 計給하여 大典의 級價規定에 따라 州府에는 20월 郡縣 이하에는 15월을 紿馬한다. 그리고 각 郡邑과 서울간의 거리에 遠近의 차이가 있으므로 途中糧料所載馬를 거리의 원근에 따라 별도로 加給한다. ④ 守令이 公務로 上京할 때는 日程을 기준으로 하여 紿馬하며, 또한 공무로 境內를 往來할 때와 觀親父母問病省墓등의 私務로 외출할 때도 大同米에서 刷馬費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

⑥ 各官月課軍器費

各官에 備置하는 鳥銃 鉛丸 火藥등 소위 月課軍器費를 民結에 費徵하는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大同法을 設施할 때 이를 儲置米에 計給하고 民結費徵을 금하기로 하였다.²⁶⁾

〈表·9〉의 各官月課軍器費는 忠淸道大同事目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인데 郡邑의大小에 따라 지급량에 차등을 두어 최하 13石 5斗에서 최고 160石에 이르고 있다. 大同法 초기에는 各官의 月課軍器를 計給된 大同儲置米로써 各官에 自備하였으나 肅宗 연간에 이르러 三南 各官의 月課軍器는 京中의 각 軍門 軍器寺 賬恤廳에서

〈表·9〉 各官月課軍器費 (忠淸道)

	鳥銃	火華	鉛丸	1年價米
大邑(4官)	每月 2柄 (1柄當 3石 5斗)	每月 8斤 (1斤當 10斗)	400개 100개당米 5斗	160石
中邑(7官)	每月 1柄	每月 4斤	每月 200개	80石
小邑(33官)	每 2月 1柄	每 2月 4斤	每 2月 200개	40石
殘邑(10官)	每 6月 1柄	每 6月 4斤	每 6月 200개	13石 5斗

資料：忠淸道大同事目

23) 各邑刷馬一息程 困年則給二斗 中年則給二斗五升 豊年則給三斗爲白乎矣
(忠淸道 大同事目)

24) 人吏八結이란 各官 鄉吏의 保有耕地에 대해 田稅와 貢賦(進上 貢物) 이외에 雜役을 면제하고 그 대신 刷馬費를 부과하는 制度를 말하는 것이다.

人吏八結 復其雜役 名之人吏八結 只責刷馬是白如乎
(全南道大同事目)

25) 守令因公 上京時 四日程以下 紿刷馬四駄 道公因公往來時 則給二駄 至於私自出入 與觀親·病親·掃墳·科舉等 受由時限 各給二駄 而其價 皆外大同米計給爲白乎矣
(全南道大同事目)

26) 各官月課軍器假 在前雖有不煩民力之事目 各邑或有責出其價 於民結者 故並入於大同摩鍊之中
(忠淸道大同事目)

請負製作하여 각 官으로 下送하고 그 製作費는 宣惠廳에서 지급받도록 措備方法을 바꾸었다.

⑦ 祭祀費

各 郡縣에서 거행하는 각종 祭祀에 써는 祭物(米 魚 肉物) 및 幣帛 筆墨價米를 儲置米에 計給하였다. 全南道大同事目에는 道內 各官에서 거행하는 社稷祭 城隍祭 廉祭 鄉校祭 賜額書院祭등 각종 제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大同米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어 各官 社稷祭에는 幣帛價米 20斗, 文廟祭에는 幣帛價米 3石 5斗와 牛脯價米 8石~14石을 計給하며 그 밖에 各官 城隍祭와 廉祭의 경비도 大同米에서 補助하였다.²⁷⁾

江原廳事例에 따르면 道內 各官에서 거행하는 祭祀에는 春秋社稷祭 城隍祭(地方守護守) 廉祭(廉鬼祭) 義祭 賜額書院祭 襄陽東海廟祭 原州春秋珉瑟押祭 淮陽義館嶺祭 德津溟所祭 鄉校修改移還安告祭 등이 있으며, 이들 각종 祭祀費를 <表·10>과 같이 大同米에서 計給해주고 있다. 이 밖에 嶺南廳事例와 忠清道大同事目에도 各官祭祀費를 儲置米에 計給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⑧ 官船改造·修理費

各官 津船·水站船·戰船 등 각종 官船의 改造·修理(改塑)에 소요되는 경비를

<表·10>

各官祭祀費計給表

(江原道)

春秋社稷祭	大米 17石 5斗 田米 14石 5升 錢 17兩 1錢 7分 (이상 各官儲置米에 計給)
春秋城隍祭告祭三巡祭	大米 7斗 5升 田米 7斗 2升 5合 錢 73兩 3分 (이상 原州 淮陽計給)
義祭	大米 7石 4斗 2升 5勺 田米 1斗 5升 錢 11兩 2錢 (이상 原州 金化江陵鐵計給)
襄陽東海廟祭	11兩 5錢
原州春秋珉瑟押祭	大米 1斗 4升
雉獄山春秋三巡祭	大米 7斗 5升 田米 2斗 2升 5合
淮陽義館嶺祭德津溟所祭	合 9錢 5分
鄉校修改移安告祭(但隨時計給)	

資料：江原廳事例

27) 一、社稷祭享幣帛 則春秋各給十斗 城隍·廉祭祭需……如有元穀不足之處 則亦以大同米量宜添給爲自齊

一、文廟五聖位幣帛 以苧布磨練價米三石五斗 及牛脯價米 郡以上 則春秋并十四石 則八石 皆以大同米題給爲白乎矣 賜額書院幣帛段置 亦依此題給爲白齊
(全南道大同事目)

儲置米에 計給하고 있다. 忠淸道의 경우를 보면 該道 左水站의 荷朴船 7隻과 右水站의 哨尗船 3隻에 대한 修理費條로 每 3年마다 전자에 米 15石, 후자에 25石을 계급하고, 또한 改造費條로 每 10年마다 전자에 10石, 후자에 60石을 각각 儲置米에 計給하고 있다.

그리고 津船에 대해서는 改造·修理年限을 각각 3年 6年으로 定하고 改造費는 1隻에 米 9~13石, 修理費는 3~4石씩을 計給하고, 戰船은 修理年限을 3年, 改造年限을 5年으로 각각 定하고 매년 大同米에서 100石씩을 計給하여 蕊積토록 하고 있다.²⁸⁾ 이같은 官船改造·修理費는 每年 支出되는 經常費가 아니고 3~10年에 한 번씩 周期的으로 支出되는 것이므로 臨時費에 準하는 것이다.

⑨ 기 타

大同儲置米에 計給한 各 官經費의 費目은 이밖에도 아래와 같은 費目이 있다. 水陸軍合同演習에 참가하는 軍兵의 식량과 기타경비, [各 官分養馬制度에 따른 馬裝價와 故失價, 官衙 및 客舍補修費, 文武科의 鄉試(初試)에 소요되는 경비, 戸籍改錄을 위한 紙筆墨價 및 雜費, 守令解由費 등이다.

이상과 같이 各 官經費의 여러 費目에 걸쳐서 혹은 전액을 혹은 부족분의 일부를 大同米로 支給하고 있으나, 郡縣마다 支給費目이나 支給額이 동일하지는 않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口, 復戶結

復戶結이란 大同法下에 1結에 평균 12斗의 大同米를 復戶에 지급하는 田結(土地)을 지칭하는 것이다. 아래의 世宗實錄의記事가 示唆하는 바와 같이 復戶는 家戶에 부과하는 徵役(賦役)을 減免해주는 民戶이다.

京畿徭役 倍於他道…又諸員之額甚多 皆復其家徭役 歸於他戶 弗於民²⁹⁾

조선전기에 家戶에 부과하는 徵役에는 所耕의役과 雜役이 있었다. 前者は 田稅(稅穀·布)의 운반을 비롯한 田稅의役과 貢納物資의 生產輸京을 비롯한 貢賦의役으로 구성되며, 後者(雜役)는 所耕의役에 속하지 않는 地方官府에서 주관하는 小規模의役으로서 築牧場 堤堰修築 輸木石 修站館 狩獵 海產物採取 官營蚕室의 養蠶勞動 등이다.³⁰⁾

復戶가 減免받는 徵役의 범위는 조선전기에도 時代의 推移에 따라 변천해 왔고,

28) 忠淸道大同事目

29) 世宗實錄 卷 28, 7年 6月 辛酉

30) 朝鮮前期의 徵役(부역)에 관해서는 有井智德氏의 論文「李朝初期徭役」(朝鮮學報 30·31)이 있다.

또한 被復戶者의 身分과 職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체로 雜役만을 免除받는 復戶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復戶의 對象者(被復戶者)로는 王族 孝友節義 善行者 被災害者 貧窮者 徒民 寺院 軍役服務者 戰死者 漕軍 津夫 및 이밖에 定役戶로서의 鄉吏 驛吏卒 守陵軍 各官奴婢 內需司奴婢 選上奴婢 藥子 鹽干 鷹師 冰夫 中央官府定役人 등이 있다.³¹⁾ 復戶는 年限을 기준으로 할 때 1~6年에 걸쳐 徵役을 감면해주는 限年復戶와 무기한의 永年復戶가 있다.

조선후기에 大同法을 실시할 때 家戶에 부과하는 모든 徵役을 大同稅에 吸收統合하였기 때문에 法制上으로는 徵役制가 폐지되었다. 이 결과 종래의 復戶對象者에 대해서는 1結에 평균 大同米 12斗씩을 지급하는 田結給復制를 실시하여 復戶結(또는 復戶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大同法下의 復戶對象者는 전기에 비하여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表·11, 12>는 大同法下의 江原·忠淸道의 復戶結의 지급대상자와 지급 結數를 밝힌 것이다. 이 두 道와 他道의 給復內容을 종합해 볼 때 후기에는 전기에 비하여 復戶對象範圍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후기에는 전기에 被復戶者였던 貧窮者, 年老者, 被災害者, 軍役服務者의 대부분, 中央官府定役人(伴僕 吏胥 皂隸 司僕寺諸員 繕工監木匠 選上奴婢 鹽戶 藥子 生鮮干) 院主 牧子 向化人 流移者 徒民 公務中死亡者 儒生 등이 給復對象에서 제외된 것으로 민

<表·11>

忠淸道 給復內譯

被給復者	給復結數	被給復者	給復結數
内官	2結	津夫(錦江)	20結
内醫女	"	"(熊津)	10〃
驛吏	"	"(山界北津)	10〃
驛卒	"	"(白馬江)	8〃
驛奴	"	"(古城津)	8〃
日守	"	"(潤江)	6〃
漕軍	2結 漕船新造年 加結 1結	"(景津)	5〃
忠臣	2結	津夫(虎灘)	5〃
孝子	"	"(赤登東津)	5〃
烈女	"	"(仁化)	3〃
侍女	"	"(馬津)	3〃
戰亡人	"	"(淸風北津)	2〃
外醫女	"	"(永春官津)	2〃
漢原府院君	10結	"(鵠川)	1〃
		"(無限津)	1〃

資料: (忠淸道大同事目) 제42조

31) ⑦ 經國大典 兵典 復戶條, 同書 戶典 徵賦 條

◎ 有井智德 上揭論文

<表·12>

江原道給復內譯

復 戶 者	給 復 結 數
人 驛	吏 卒
忠·孝·烈·戰·矢·人·弓·人·外	亡 人 醫 女
烽	軍
內	醫 女
大君·前朝·國朝名臣·清白吏表著者墓直	如梅
津	夫
內 書	官 院
	官秩에 따라 多寡不同 大·中·小路에 따라 多寡不同 每人 50負 每人 1結 每人 50負 每人 1結 50負 多寡不同 每人 50負 江原廳 負擔額 592兩 哲宗戊辰年 革罷

資料：(江原廳事例)

는다.

地方財政을 다루는 本稿에서는 郡縣財政과 관련되는 各官 鄉吏에 대한 田結給復을 살펴본다. 役制가 紿價雇立制로 變轉한 조선후기의 일반적 추세에 비추어 鄉吏에 대해서도 다른 身役(定役)부담자와 같이 어느 정도의 報酬(役價)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鄉吏에 대한 田結給復은 비록 地方官의 직접적인 收入은 아닐지라도 일종의 收入으로 간주할 수 있다.

各官 鄉吏에 대한 復戶結의 지급실태를 地域별로 살펴본다. 海西廳事例에는 黃海道各官의 人吏復戶田을 州府에는 30結, 郡에는 25結, 縣에는 20結씩을 각각 지급하고, 人吏 이외의 各官官屬에 대해서는 大邑에 50結, 中邑 40結, 小邑 30結, 殘邑에 20結의 復戶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慶尙道에는 人吏復戶田을 州牧에 100結, 郡縣에 80結로 定限하여 道內各官에 합계 12,800여結에 달하는 人吏復戶結을 지급하였다.³²⁾ 全南道大同事目 復戶條에는 該道各官의 人吏復戶結의 지급을 忠淸道의 例에 딸른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慶尙道는 兩湖(忠淸·全羅道)의 例에 따라 人吏復戶結을 지급한다고 하므로 全羅·忠淸道各官의 人吏復戶結의 규모도 경상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各官 鄉吏에 대한 田結給復 이외에 各官의 外醫女(2結給復) 津夫(50負) 및 驛吏卒에 대해서도 田結給復을 실시하였다. <表·13>은 忠淸道 各津의 津夫에 대한 復戶結의 지급 내용이다.

32) 當初人吏復戶爲一萬一千八百餘結……康熙戊子因監營所報 人吏復戶 依兩湖分等之例 州牧百結 郡縣八十結定給 以備定限之數
(嶺南廳事例)

〈表·13〉

忠清道各津給復田結

津名	結數	津名	結數
錦江	20結	景津	5結
熊津山界		虎灘	5結
北津	10結	赤登	5結
徳川	10結	東津	5結
白馬江古城津		仁花津	3結
各結	20結	馬津	3結
荆江	6結	清風北津	2結
		永春官津	2結
		鵠川津	1結
		無限城津	1結

資料：忠清道大同事目

表에 보드시 忠淸道各津의 津夫에 대한 復戶結이 1結에서 20結에 이르기까지 격차가 생기게 되는 것은 津의 수송량의 차파에 따라 각津에 배속된 津夫의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江原廳事例에 따르면 該道의 各官津夫에 대한 1人當給復結數가 50負로 定限되어 있으므로³³⁾ 他道의 그것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驛吏卒의 復戶結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조선후기의 大同法下에 各官鄉吏를 비롯한 地方公共機關의 有役人에게 所定量의 田結에 대한 大同米를 받게 하는 復戶結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① 大同法의 실시에 따라 徭役制(부여노동)가 폐지되고 그것이 大同稅에 吸收되었고, ② 鄉吏를 비롯한 地方公共機關의 有役人们이 大同法 이전에 徭役을 免免받는 被復戶者였고 ③ 조선후기에 役制가 전기의 義務的인 無價立役제에서 점차로 紬價雇立制로 발전해간데 있다.

四. 鄉吏田

鄉吏는 地方末端의 통치기관인 郡縣의 行政 徵稅 兵務를 비롯한 統治業務를 담당하는 世襲的인 職役負擔者로서 特殊身分層을 형성하고 있었다. 선조에는 이를 鄉吏에 鄉吏田³⁴⁾ 또는 人吏位田³⁵⁾이라고 부르는 土地를 지급하였다. 鄉吏田은 郡縣에서 직접 收稅하는 公須田이나, 直營하는 官屯田과는 다르지만 郡縣의 公役을 담당하는 鄉吏에게 일종의 報酬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地方財政과 깊은 관련성을 갖

33) 江原廳事例

34) 殿下即位之初 損益制度遂正經界 將京畿左右道及六道之田 以定陵寢·倉庫·軍資·公廨·寺院田·學校·神祠·鄉·津·驛吏·純匠等田(太祖實錄 卷 7, 4年 4月 丁卯 大同憲 朴經等疏)

35) 前略請以忠淸·全羅道人吏位田 假屬軍資者 擇二千結 屬本官 每年收稅 遣運納于內需司從之(世宗實錄 卷 123, 31年 1月 丙午)

는 土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것이다.

科田法에는 鄉吏田을 兩班 階級에 지급하는 科田과 구별하여 津夫 驛吏卒 匠人 기타 下級職役(賤役) 부담자에게 지급하는 土地와 같은 範疇에 넣고 있다.³⁶⁾ 鄉吏田에 대한 生產關係를 비롯한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히 알 길이 없고 다만 實錄 등의 年代記史書에 나타난 단편적인記事에 의해서 그 윤곽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世宗實錄의記事에 따르면 당시 平安·咸鏡道를 제외한 6道各官의 鄉吏 1人當 稅位田으로 水田 2結과 口分田으로서 旱田 3結 합계 5結의 鄉吏田을 지급하고, 水田 2結의 稅位田에 대해서는 國家에 稅를 부담해 하고 旱田 3結의 口分田에 는 免稅하였다.³⁷⁾ 그러나 京畿道各官에 있어서는 鄉吏稅位田의 1結 收稅額은 2斗, 여타도는 30斗로 稅額에 차이가 있다.³⁸⁾ 平安·咸鏡道에는 鮮初에 鄉吏體制가 未備되어 소수의 鄉吏를 가진 郡縣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郡縣에서는 良人士官 또는 軍士가 鄉役을 담당하였다.³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道各官의 鄉吏에 대해서는 1人當 5結의 土地가 지급된 것이 분명하나 문제는 이를 鄉吏 全員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鄉吏層의 일부에게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이다.

한 郡縣이 갖는 鄉吏의 수는 다음과 차이가 있으나 <表·14>에서 보듯이 조선전기에 한 郡縣이 갖는 鄉吏의 法定人員數는 최하 46명에서 최고 78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定員數를 훨씬 초과하여 수백명에 달하는 군현이 많았다.⁴⁰⁾ 어쨌든 法定定數의 鄉吏全員에게 1人當 5結씩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한 郡縣의

36) 鄉·津·驛吏·軍·匠·雜色之田
(高麗史 卷 78, 食質志 1 田制)

37) 議政府據戶曹呈啓 慶尙道三稅收納之法 人吏每一人位 旱田水田并五結 以水田二結爲稅位 若陳損不敷其數 則勿論旱田 並以元數粳米收之 請自今 人吏稅水田不足之數 勿令並收粳米 乃以口分旱田所出 依數以納 從之²⁰²⁾
(世宗實錄 卷 86, 21年 9月 乙卯)

38) 京畿各官人吏位田 每一結稅二斗 納廣興倉 忠清·全羅·慶尙·江原·黃海道各官人吏位田 每五結內 二結屬廣興倉 三結爲口分 然廣興納二結稅六十斗 每年不足 以口分充之 位田有名無實 惡他艱苦軍役之人 亦皆無位田 今悉革之 兵正·倉正·獄正·客舍正·國庫直及紙匠位田 亦並革之²⁰³⁾
(世宗實錄 卷 109, 27年 7月 乙酉)

39) ⑦ ① 平安道 無鄉吏 故以良人爲土官或爲驍尉(成宗實錄 卷 256, 22年 8月 丁卯 知事魚世謙 啓) ② 平安州郡皆無鄉吏 號爲衙吏者 皆名編軍伍 而又供馬遞 一人之身 恒兼數役 臣恐民不堪苦(成宗實錄 卷 116, 11年 4月 癸亥 掌令 丘致峴 啓) ③ 永安道諸邑 有鄉吏處少 故以軍士爲衙前 素不閑簿書 由是各官文籍 多致錯誤 臣意下三道鄉吏徙居者 屬諸鎮邑 以掌文書(成宗實錄 卷 188, 17年 2月 戊戌 永安道敬差官 鄭誠謹 啓) ④ 禮曹據咸吉道監司關啓 道內吉州·北青·鏡城·慶源·甲山等官 皆以閑良人定爲鄉吏役(世宗實錄 卷 28, 7年 4月 庚子) ⑤ 永興府觀察使營也 公隸所供之役 倍於他郡 而本府殘弊 人吏數少 勢不能堪 故不得已舊營咸興之人…(成宗實錄 卷 134, 12年 10月 丙午 許琮 李坡 李德良 啓)

⑧ 武田幸男, 高麗·李朝時代の邑吏田(朝鮮學報 39~40 輯所收) 參照

40) 京外吏類 莫不澆亂 京司猶有定額 外邑全無限制 多或至數百…少不下六十
(丁若鏞 牧民心書 吏典)

鄉吏田은 230結~390結이 되며, 한 道의 그것은 1만 5천結 안밖에 달하게 된다. 그 르므로 이렇게 廣大한 土地가 鄉吏들에게 지급될 수는 없기 때문에 鄉吏層의 일부에게만 土地가 지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鄉吏田은 官屯田과 같은 官有地가 아니고 民田收稅地(收稅權移讓地)인 것으로 믿는다. 鄉吏田 5結 가운데 稅位田(水田) 2結에 대해서는 국각에 대해 60斗의 稅를 부달했기 때문에 鄉吏들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또한 軍役負擔者에 대해서도 軍田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世宗 27年 7月 公廨田改革時에 鄉吏田이 紙匠田과 더불어 폐지되었다.⁴¹⁾ 이리하여 鄉吏들은 한동안 土地에서 유리되어 있다가 임란후에 실시된 大同法下에 기술한 바와 같은 復戶結을 받게 되었다.

〈表·14〉 各官鄉吏定員數

	府	大都護府	牧	都護府	郡	縣
書員	34	30	30	26	22	18
日守	44	40	40	36	32	28
計	78	70	70	62	54	46

資料：經國大典 兵典 外衛前條

2. 戶役

조선조에서는 民戶(家戶)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封建的 稅役을 戶役이라고 불렀다. 大同法 이전에 있어서 戶役에는 程役(부역), 貢物, 進上 및 雜稅가 있었다. 이같은 戶役은 中央(國家) 財政은 물론이고 地方財政에도 주요 收入源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王亂後 大同法을 실시할 때 종래의 모든 戶役을 大同稅에 吸收하고 다만 地方官府의 需要를充足하기 위하여 課徵한 雉·鷄·柴·炭·氷丁 등의 地方貢物(鄉貢)만을 戶役(正規稅)으로 남겨 두었다.

대同法의 稅制改革을 추진할 때 金堉을 비롯한 改革派官僚들은 1結에 10斗를 초과하는 高率의 大同稅 가운데는 종래의 正規稅는 물론이고 科外雜稅(集正規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田稅 大同稅 三手米 鄉貢 등의 正規稅를 제외한 일체의 科外雜稅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公約하고⁴²⁾ 또한 그것이 각 道大同事目에도 明示되어 있다. 그러나 財政改革後 얼마 안가서 주로 結役이나 戶役의 형태로 國稅 또는 地

41) 世宗實錄 卷 109, 27年 7月 乙酉 條

42) ⑦ 前略 則據爲十斗 而田稅之外 進上 貢物雜役本邑納 皆在其中 一納之後 終年安臥
(孝宗實錄 卷 2, 即位年 11月 庚申 金堉啓)

⑭ 大同初設之法 一結田稅正供之外 又收十六斗之宣惠廳 以應諸色進上貢物之役 此外更無他役 故十六斗之法 雖非薄賦 而民情編以為便矣
(承政員日記 顯宗 2年 10月 4日 李建啓)

方稅의 성격을 띤 科外雜稅가 復活하여 歲加月增해 갔고, 한편에 있어서는 이미 收奪機構로 變質한 還穀을 통한 高利貸의 收奪과 또한 役制를 통한 身役(布錢穀) 收奪이 날로 強化되어 갔다. 이러한 苛斂誅求의 強化는 18~19세기에 걸쳐서 진행된 財政危機의 深化 國家財政과 地方財政의 전면적 破綻을 反映하여 진행된 것이다.

<表·15>는 正祖 18년에 편찬한 賦役實摠에서 임의 추출한 9개관의 戶役收入을 表한 것인데, 이는 郡縣經費를 戶役으로 정세한 것이다. 여러가지 收入項目 가운데 正規稅는 大同稅에 吸收하지 않고 남겨둔 鄉貢(雉鷄柴炭冰丁)뿐이고, 나머지의 戶役은 모두가 科外雜稅이다.

表에 나타나고 있는 補民廳 또는 補民庫라는 것은 조선후기에 여러 郡縣에서 設置한 것인데 이는 各官公文書를 전달하는 下人(公事持者), 使客迎蓬軍 定罪人領去軍등 公役담당자의 紙價雇立을 위한 役價(賃金)의 財源을 조달하는 기관으로서 설치된 것이다. 民轉錢은 守令이 在任時に 死亡하거나, 또는 親喪・妻喪을 당할 때 주는 賄儀金을 지칭하는 것이고, 傳關祖는 京邸吏 各營主人의 役價(報酬), 中央官府에 公文書를 傳達하는 公事持者 및 각종 公役담당자의 屬價(給與)支給을 위한 財源이다. 그리고 式年成籍時의 紙筆墨價 雜費 및 戶籍書寫錢은 每式年마다 호적을 改錄할 때 소요되는 종이 등의 文具費 雜費 및 事務費(人件費)이다.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郡縣에 따라 戶役의 種目과 그 數가 다를 뿐 아니라 그 絶對額에 있어서도 다음과의 격차가 크다. 雜物을 제외하고 錢・穀만을 쌀로 대충 換算해 보면 天安郡의 戶役收入이 194石, 舒川郡 153石, 禮山縣 104石, 晉州牧 8,280石, 蔚山府 403石, 泰川縣 550石, 肇川府 404石으로 各官 戶役收入이 수 百石에서 수 천石의 거액에 달할 뿐 아니라 稅收額의 격차도 심하다. 특히 注目을 끄어는 것은 雉・鷄・柴・炭・冰丁을 제외한 各官 戶役의 대부분이 法典의 稅法規定에 없는 科外雜稅이고 또한 戶役의 대부분이 大同事目에 儲置米에 計給한다고 규정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課徵되고 있는 사실이다. 地方正規稅인 鄉貢(雉鷄柴炭冰丁)은 원래 戶役에 속하는 것인데 表에 실린 9개관 가운데 晉州등 6개官에서는 戶役으로 本色現物 또는 錢貨로 정세하고 있는데 대해서 天安 舒川 禮山(冰丁價만 정세)등 3개官에서는 이를 結役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戶役에는 없다. 賦役實摠을 일별해 보면 전체적으로 鄉貢을 結役으로서 土地에 부과하는 郡縣이 많다. 貢物의 일종인 鄉貢은 원래는 家戶를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戶役이 있으나, 조선후기에 公平課稅를 지향하여 徵役 貢物 進上을 주체로 하는 종래의 戶役을 보다 合理的 부과방법인 結役(大同法)으로 바꾸어 土地에 부과하는 前進的 改革이

〈表・15〉

各官戸役收入表

天安郡	補民廳 500兩 民轉兩 300錢 誠所設場錢 83兩 式年成籍時 紙筆墨價及雜費 米 43石 13斗 戶籍書寫租 稟 205石 11斗		傳關皮牛 403石
	柴 1,230丹		
	炭 50石		
	小炬 1,230柄		
	馬草 900丹		
舒川郡	乾栗 10斗 生栗 10斗 生蟹 200개 民轉錢 316兩 式年成籍時 紙筆墨價 咎 雜費 100石	河東府	藻草 1,944丹
	傳關租 972石		
	雉鶴喚 486首		
	銀生蟹 300束		
	柏子 800개		
禮山縣	冰丁錢 30 · 3 · 民轉錢 220兩 試所設場費 每戶 長木 1개 帶木 4개 把子 1浮 荆棘 2負 式年成籍時 紙筆墨價 咎 雜費 米 48石 6斗 戶籍書寫 72錢		古舌 1石
	松茸 36級		
	雀板 4斗		
	根 30立		
	生鷄 2,428首		
泰川縣	鷄卵 2,428개	泰川縣	
	生雉 1,036首		
	役價 小米 550石 14斗 7升		
	白米 144石 5斗		
	大米 260石 6斗 6升		
晋州牧	牧漕倉傳關米 50石 般材曳運價米 200石 補民庫租 497石 5斗 補民牟 497石 5斗 人口錢 1,802兩 3錢 雉鶴錢 497兩 8錢 5分 柴炭穀草錢 1,764兩 6錢 8分 雜種價錢 1,114兩 3錢 4分 進上節扇竹添神錢 628兩 1錢 1分 雜役錢 4,594兩 3錢 9分 雇馬喂養錢 200兩 舖陳錢 120兩 蓼價添補錢 961兩 松板 55立 松烟 7斤 2兩 五味子 1斗 5升	肅川府	鹽海草席 36石
	草席 459斤		
	鷄柴 108立		
	穀 4,366首		
	燒木 14,550束		
蔚王府	炬子 6,572束	龜城府	
	木 2,910束		
	子 2,910束		
	牛稅小米 600石		
	直莊 24石		
	水莊 24石		
	粘小米 2石		
	稷米 2石		
	麥米 2石		
	赤豆 7石		
	菜豆 7石		
	生鷄 8石		
	鷄卵 680首		
	雉鶴 2,723首		
	鶴卵 5,446개		

石 魚	50束	蓋 草	2,109束
柴 草	10,545束	雜費條小米	234石
穀 草	2,109束	鹽價錢	30兩
燒 木	4,218束	柴油價錢	30兩
柵 木	2,109束	錢 文	118兩 9錢 5分
長 木	2,109개		

資料：賦役實摺 卷 2, 3, 6, 10, 11

실현됨에 따라 비록 鄉貢이 改革對象에서 제외된 것이라 할지라도 歷史的 發展趨勢에 따라 이를 結役으로 부과하는 郡縣이 많았던 것이다.

3. 身 役

조선전기에 郡縣에 배속되어 公役(公務)을 담당하는 身役(定役)부담자에는 鄉吏官奴婢 外工匠 등이 있었다. 그리고 地方軍事官府(主鎮 巨鎮 諸鎮)의 軍務는 軍役부담자인 當番軍兵이 담당하였고, 이밖에 潛倉에는 潛軍, 各驛에는 驛吏卒 등의 定役 부담자가 배속되어 公役 수행에 필요한 勞務를 제공하였다.

役制가 전기적인 無價立役制(無償義務制)로부터 紿價雇立制로 전진적 變化를 일어킨 후기에는 地方公共機關의 定役과 軍役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中央官府와 같이 身役(定役 軍役)부담자로 부터 勞役을 직접 제공받는 대신에 布 또는 錢穀으로 身役價를 징세하여 이를 雇立된 公役從事者에 대한 役價(給與)를 지급하거나 또는 公共經費에 사용하였다.

〈表·16〉에서 보드시 각 官은 軍役 定役의 身役義務者들로써 放役收布(錢穀)하는 保를 조직하여 身役價를 징수하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郡縣이 配定받은 役丁(軍役·定役人口)의 수는 보통 수 백명에서 1천명을 넘는 곳도(海州·淸州)도 있으며, 이들로 부터 1人當 1兩에서 2兩에 이르는 身役價를 징수하고 있다. 表에 실린 7개관을 볼 때 한 郡縣에서 징세하는 身役收入은 최하가 白川縣의 9백여兩(米換算額 150石), 최고는 慶州府의 3천 8백여兩(米646石)의 거액에 달한다.

保의 명칭은 役種 또는 役價의 用途에 따라 束伍保 除番軍官保 馬兵保 醫生保 羅卒保 進上藥夫保 大同軍官保 雇馬軍官保 鄉校保등 다양하다. 각 官 身役價의 用途는 郡邑에 따라 차이가 있고 定限이 없으나, 대충 정리해보면 外貢으로 남은 進上物資의 調達·上納費, 각 官軍器 購入 및 修理費, 鄉校祭祀費, 雇馬費, 羅卒 旗手軍 使令 京邸吏 및 下人등 公役 수행자에 대한 紿價(雇價 또는 役價), 公廨修理費 軍案·奴婢案改錄費 및 기타 경비로 분류된다. 身役價는 그 성질상 放役納布(錢穀)

<表・16>

各官身役價收入

	官軍官 240名 每名 2兩 480兩 (募馬 24匹 備位) 羅卒保 176名 每名 1兩 6錢 281兩 6錢 (羅卒等立番雇錢補用) 旗手保 80名 每名 1兩 6錢 128兩 (各行次旗手軍雇價補用) 束伍保 307名 每名 1兩 307兩 (三都試時抬箭鋸鼓手等雇錢補用)		防船除番軍官 5名 每名 2兩 10兩 (防船軍器修補時補用) 補役軍除番軍官 70名 每名 2兩 140兩 (各行次時陪把人馬雇錢及喪行擔 軍價補用) 計 671名 10石 7斗 900兩
海州牧	軍器軍官 336名 每名 2兩 672兩 (軍器什物修補時補用) 官砲手 40名 每名 7錢 5分 29兩 (弓箭庫點火及火藥庫守直軍雇錢 補用) 醫生保 8名 每名 1兩 6錢 12兩 8錢 (進上藥材採取時雇軍價) 兼濟庫募入 245名 每名 1兩 6錢 392兩 (邑民各樣徭役防給) 計 1,432名 2,302兩 4錢		官砲錢 60名 每名 2兩 60兩 (篆文封裏價行獵砲手等捉虎施賞) 弓矢人除番錢 100名 每名 2兩 200兩 (軍器什物修補價・火藥購入價・ 雉羽價) 歲抄時軍保 每口錢 4錢 (紙筆墨價 吳 雜費) 馬兵保錢 460名 每名 2兩 832兩 武年改都時砲手保・禁御營軍保・騎 步兵等 8,437名 每名 3分~7分 353兩 3錢 (紙筆墨價 吳 雜費)
		清州牧	10年 1次大都案時 水軍騎步兵等 4,140名 每名 3分~1錢 258兩 1錢 1分 奴婢改續案債 232口 每口 7錢 162兩 4錢 進上藥夫保錢 133名 每名 2兩 266兩 鄉校保錢 50名 每名 1兩 50兩 華陽書院保錢 30名 // 30兩 莘卷書院保錢 20名 // 20兩 二忠祠保錢 10名 // 10兩 各廳下人保錢 35名 // 35兩 驛卒保錢 68名 每名 2兩 136兩 計 1,138名 2,293兩
白川郡	鄉校募入 31名 每名 大米 3斗 6石 3斗 (祭享時舖陳燈油補用) 書院募入 20名 每名 大米 3斗 4石 (위와 같음) 除番軍官 150名 每名 2兩 300兩 (公廨修補・出使校卒助糧補用) 鄉廳保軍 15名 每名 1兩 15兩 (各站雜費補用) 正朝戶長保 34名 每名 1兩 34兩 (禮曹吏曹等禮納作紙及上京時雜 費保用) 官吏保 34名 通引保 25名 使令保 32名 (因公出使時助糧補用) 藥漢保 30名 每名 2錢 60兩 (藥材進上時人情雜費補用) 江西寺募入 80名 每名 2兩 160兩 (本寺庶子進上時補用) 軍器除番軍官 45名 每名 2兩 90兩 (軍器修補時補用)		大同生(身役錢) 395名 每名 2兩 790兩 大同軍官 326名 // 652兩 雇馬軍官 96名 // 192兩 軍器軍官 147名 // 294兩 縣軍官 226名 // 452兩 討捕軍官 60名 // 120兩 旗牌官 53名 // 106兩
		龍岡郡	

		教師旗手 84名 每名 1兩 84兩 管城旗牌官 36名 每名 2兩 72兩 贍學生番米 54名 每名 5斗 18石 影殿生番米 114名 " 30石 10斗 5升 書院生番米 20名 " 6石 10斗 校生番米 30名 " 10石 舟師軍官 188名 每名 1兩 282兩 計 1,534名 3,044兩 65石 10斗	延邊軍錢 計 1,670兩 40石 7斗 5升	620兩
			馬兵保錢 20名 每名 2兩 40兩 歲抄時軍保 每名 5錢 ○○ (紙筆墨價 및 雜費) 式年改都案時 良軍 1884名 每名 1 錢 私奴軍 588名 每名 5分 217分 8兩 (錢紙筆墨價 및 雜費)	
慶 州		別軍官錢 900兩 別武士錢 500兩 硫黃軍錢 100兩 別砲手錢 700兩 補供生錢 680兩 採薑軍錢 1,000兩 計 8,880兩	10年 1次大都案時 良軍 88名 每名 1錢 5分 118兩 2錢 (紙筆墨價 및 雜費) 奴婢改續案債 32口 每口 3錢 9兩 6錢 進上陪京保錢 36名 每名 2兩 72兩 進上藥夫保錢 80名 " 160兩 軍器保錢 29名 " 58兩 鄉校保錢 28名 " 56兩 文獻書院保錢 3名 " 6兩 鄉所保錢 9名 " 18兩 邸吏保錢 10名 " 20兩 正朝進俸戶長保錢 15名 " 30兩 各廳下人保錢 16名 " 32兩 監營主人保錢 8名 " 16兩 驛卒保錢 87名 " 174兩 計 340名 1,040兩	
晋 州		軍官除番錢(軍官給料 및 官用) 240兩 進上軍保錢 160兩 藥保錢 140兩 軍器監官除番錢 244兩 別軍官除番米 16石 10斗 募軍租·錢 租 47石 錢 60兩 物膳軍錢 120兩 紙除役錢 72兩 醫生除役錢 14兩		

資料：賦役實據 卷 2, 9, 6, 11

者로 부터 징수하는 役價로써 扱立된 公役 수행자에 대한 報酬支給에만 사용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費目에 無制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各官身役收入으로 支辨하는 費目의 대부분이 大同儲置米를 중심으로 하는 歲出豫算에 計給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財政危機의 진행에 따른 身役誅求의 苛酷性의 일단을 露呈하는 것이다.

4. 還穀利子

조선중기 이후 還穀이 점차로 社會政策的 產業政策的 機能을 상실하고 官營高利貸로 변질하여 국가의 財源調達手段으로 轉落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임진란 이래로 財政難이 격화하는 과정에서 財政赤字의 補填手段으로서 적극적으로 利用

되기 시작한 還穀은 해를 거듭할 수록 그 규모가膨脹하여 이미 英祖 원년(1725)에 41萬石이었던 것이 正祖 21년(1797)에는 무려 938만여石에 달하였다.⁴³⁾ 이 시기에 地方各級官府도 中央官府의例에 따라 財源確保를 위하여 자체의 還穀을 설치하고 또는 京司穀의 出納(貸出·回收)業務를 代行하여 耗穀(利子穀)의 일부를 分與받았다. 이리하여 朝鮮後期의 地方財政에 있어서 還耗(還穀利子)는 기술한 身役價(身布·錢·穀)와 더불어 地方財政에도 중요한 收入源이 되었다.

郡縣의 還耗收入에는 ① 京司各穀(中央官府의 會付穀)의 耗穀(還穀貸出利子)의 일부를 分與(移給)받는 부분과, ② 郡縣 자체에서 여러가지 方法으로 還穀元本을 조달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획득하는 還穀收入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①의 京司穀耗穀의 郡縣 分給에 관한 실태를 살펴본다. 繢大典 戸典에는 이에 관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戸曹穀은 1石에 대한 耗米(利子) 1斗 5升중에서 1/10인 1升 5合을 戸曹에 會錄(戶曹의 收納臺帳에 計上·記錄)하며 戸曹穀이 元穀과 합쳐서 3千石 이상이 되는 郡邑은 1石의 耗米중 3升 5合을 常平廳에 會錄하고 6千石 이상이 되는 郡邑은 6升, 1萬石 이상은 8升 5合을 會錄하고 그 나머지는 本官(郡邑)에 지급한다. 黃海·平安道는 천량을 管餉穀(군량)에 會錄한다. 常平·賑恤廳의 會付穀은 4/5를 會錄하고 1/5을 本官에 지급하며, 平安道는 천량을 會錄한다.⁴⁴⁾ 18~19세기에 있어서 京中各司의 대부분은 還穀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耗穀의 일부를 地方官에 分給한 官府는 戸曹와 常平·賑恤廳이다. 正祖 20년에 전국에 散在한 還穀의 穀名, 設置沿革, 用途, 元穀量, 貸出, 還收 등에 관한 사항을 訂한 穀摠便攷(正祖 21년 頤飭)에 따르면 正祖 21年 京畿道 각 군현에 貸出한 戸曹分留米(半分秩) 764石 3斗 7升에 대하여 每石에 1斗 5升씩을 取耗하며 그 중 1/10에 상당하는 1升 5合은 會錄하고 나머지 9/10(1斗 3升 5合)는 本官에 지급하고 있다. 각 군현에서는 分給받은 이 耗米를 校院山川節祭의 酒飯, 府院君·府夫人墓의 四名節日祭의 祭需, 老人歲饌, 陵役 및 禮葬時에 부리는 工匠·人夫등의 紿食費, 陵幸時에 사용하는 司僕馬의 馬糧, 大小官吏가 公用으로 往來할 때 부리는 驛馬의 馬糧과 驛卒의 料米, 公務를 위하여 왕래하는 西北人 및 戸曹派遣官吏에 대한 供饋, 崇義殿守僕料, 戸曹의 관할에 속하는 賞典으로서 外邑(郡縣)에서 지급하는 費用 등 각종 經費에 사용하며, 이밖에 임시경비도 通牒에 따라 이 耗穀으로써 支辨한다고 밝히고 있다.⁴⁵⁾ 그런데 같은 戸曹會付穀이라도 地域(道)에 따라

43) 穀摠便攷 1

44) 繢大典 戸典 倉庫 條

45) 以戶曹穀耗條 每石 1斗 5升式取耗 十分一 一升五合會錄 一斗三升五合守令取用 每年分四等 磨勘於戶曹 而校院及山川節祭酒飯所入 府院君府夫人墓四名日祭需 老人歲饌 陵役時

그用途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全羅道의 경우를 보면 各官分與耗米는 上納紙物 및 草席措備價, 老人歲饌 水死者 燒死者 虐曠死人 등의 恤典, 分養馬料費 등의 支辨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⁴⁶⁾

역시 穀摠便攷에 따르면 京畿道에는 같은 年代에 常賑穀(半分條) 17萬 4千 9百여 石을 貸出하여 每石에 耗穀 1斗 5升씩을 쥐득하여 그 중 1/5에 해당하는 3升씩을 本官에 지급하며 過期未婚者 未葬人 燒死者 失火人 등의 恤典, 宗親子女의 婚需, 支勒站主人의 紿料, 站舍蓋覆費, 遺棄兒·行乞兒의 紿食, 捉虎人·拯活人의 賞典, 鎮營討捕將校料, 戰防船修理費, 屯稅上納雜費, 南路撥馬草價 및 그밖의 公共經費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⁴⁷⁾

耗穀의 일부를 地方官府에 지급하는 京司穀은 이밖에도 있다. <表·17>은 正祖 21年 京司穀의 耗穀의 일부를 각 郡縣에 分給한 것을 道別로 수록한 것이다.

(耗穀) 利子穀의 일부를 郡縣에 分給하여 地方費에 충당케 하는 京司穀은 주로 戶曹各穀과 常賑各穀의 半分條(還穀의 1/2를 留庫하고 나머지 1/2을 貸出하는 것)이며, 이는 8道各官에 散在하고 있다. 이밖에도 위에 準하는 還穀이 <表·17>에 보드시 몇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浦項倉各穀은 設倉後 설치한 것으로서 元穀의 1/3을 貸出하여 耗穀 1/5을 該倉屬邑인 慶州府 清河縣 興海郡 長鬱縣 등 4개관에 分給하고 2/5는 該倉의 別將·倉卒의 月料에 사용토록 한 것이다.⁴⁸⁾ 濟倉各穀은 英祖 39년(1763)에 설치한 것으로 晉州牧 固城縣 泗川縣 昆陽郡 4개屬邑에 元穀의 1/3을 貸出하여 얻는 耗穀 가운데 1/5은 屬邑에 分給하고, 나머지 1/5는 該倉의 倉卒料米에 사용하는 것이다.⁴⁹⁾ 江原道 戶曹軍資倉各穀은 杆城 三陟 金城 등 3邑은 耗穀 가운데 1/10은 軍資倉, 2/10는 常賑廳에 각각 會錄하고, 나머지 7/10은 3邑의 經費를 支辨하여, 江陵은 耗穀 가운데 2/3은 軍資倉에 會錄하고, 1/3은 該邑經費에 써며, 道內 餘他各邑은 耗穀의 1/10을 戶曹에 會錄하고, 9/10를 各官 經費에 사

及禮葬時 工匠等料餉 陵幸時司儀馬料太 牧場貢馬沿路料太 大小公行驛人馬料太 西北人該曹差人 因公去來時供餉 崇義殿守僕料 該曹勾管賞典之自外邑上下者 皆以此穀會減 別役所用 隨其知委亦爲會減

(穀摠便攷 3 京畿條)

46) 穀摠便攷 3 全羅道條

47) 過期未婚·未葬人·及燒渙死·虎曠死·失火人恤典 宗親子女婚需而 支勒站主人料 站舍蓋覆費 貴棄兒·行乞兒給料 捉虎人·拯活人賞典 鎮營討捕將校料 監營帶率軍官料一窠 坡州帶率軍官料馬太 戰防船修改物力 瓦署踏泥牛料太 縣營區劃條壯營屯火粟給代 屯稅上納雜費 南路撥馬草價 因公幹持該廳草料去來人供餉 並以此穀上下 此外別恤典·別賞典·別役所用 隨其該廳知委亦爲會減

(穀摠便攷 3 京畿道條)

48) 穀摠便攷 3 慶尚道條

49)

〈表・17〉 京司耗穀中各官分與穀 正祖 21年(1797)

道名	穀名	貸出量 (石)	耗穀 (利子穀)(石)	郡縣分與穀 (守令取用耗穀) (石)
京畿道 (半分條)	戶曹各穀	11,477.8	1,147.11	34.5
	常賑廳各穀	92,498.2	9,249.12	1,749.4
江華府 (半分條)	戶曹勾管各鎮塋軍餉米	2,577.0	357.10	9.00
廣州府 (半分條)	戶曹各穀	118.4	11.12	10.9
	常賑各穀	2,012.6	201.5	140.4
忠清道 (半分條)	戶曹軍資倉各穀	3,674.7	367.6	330.10
	常賑廳各穀	127,711.8	12,721.2	2,544.3
	備邊司勾管			
	揚津軍餉穀	4,524.3	452.6	90.7
	貢津軍餉穀	1,206.0	120.10	24.2
	雙樹軍餉穀	22,437.10	2,243.11	897.7
慶尚道 (半分條) (二留一分條)	戶曹各穀	68,486.11	6,677.3	4,417.1
	常賑各穀	345,216.2	34,006.12	6,486.1
	戶曹元會各穀	1,165.6	116.8	34.14
	常賑各穀	5,365.2	536.7	107.4
	備局浦項倉各穀	1,906.0	190.9	29.10
	備局濟民倉各穀	16,533.3	1,653.4	330.9
全羅道 (半分條)	戶曹各穀	7,937.4	793.10	551.6
	常賑廳各穀	343,377.3	34,337.10	6,588.2
黃海道 (半分條)	戶曹軍資倉各穀	6,703.9	548.9	483.4
	常平廳各穀	107,065.10	10,535.0	2,075.4
江原道 (半分條)	戶曹軍資倉各穀	3,144.7	314.6	276.12
	戶曹鐵原軍餉各穀	943.7	94.5	94.5
	均役廳各穀	13,397.1	1,339.10	6.13
	常賑廳各穀	25,197.2	2,519.10	503.14
	備局勾管各穀	10,529.7	1,052.14	193.4
	戶曹勾管軍需各穀	7,930.6	793.0	793.0
	賑恤廳補蓼還各穀	13,210.1	1,321.0	750.0
咸鏡道 (半分條)	戶曹各穀	49,049.11	4,904.14	1,982.0
	常賑各穀	76,577.9	7,657.11	614.8
平安道	戶曹各穀	149,485.8	14,816.6	1,957.6
合計		1,511,158.7	131,103.6	34,894.1

資料：穀摺便攷 卷 2.

용토록한 것이다.⁵⁰⁾ 備局勾管各穀은 江陵府와 原州牧등 道內 11개官에 分給貸出하며 耗穀의 8/10을 備邊司에 會錄하고 2/10는 各官經費에 써도록 한 것이다.

耗穀收入의 일부를 各官(郡縣)에 지급하는 京司各穀의 總貸出額은 正祖 21년 현재 115萬여石이며, 이로 부터 推測하는 耗穀收入은 13萬 1千여石이고 이 가운데 각官에 지급한 耗穀은 3萬 3千 8百여石이다. 그르므로 이 시기에 전국의 330여郡縣에 대한 京司穀의 耗穀의 平均支給量은 약 100石이 되는 셈이다.

모든 還穀의 出納(貸出·還收)業務는 농민과 직접 접촉하는 末端行政機關인 郡縣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中央官府에서 耗穀의 일부를 郡縣에 支給하는 것은 出納業務의 代行에 대한 일종의 手數料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地方費를 補助한다는 二重的 意味를 지니는 것이다.

다음으로 ②의 郡縣 자체에서 설치한 還穀에 의한 耗穀收入에 관하여 살펴본다. 穀據便攷를 비롯한 각종 史料에 따르면 18~19세기에 많은 郡縣에서는 자체의 還穀을 설치하고 있다. <表·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安道의 경우 18세기 말의 正祖 20年께에 郡縣마다 各邑會外穀 또는 各邑私庫穀이라는 독자의 還穀을 설치하여 그 耗穀收入을 郡縣의 主要財源으로 삼고 있다. 表에서 볼 수 있드시 平安道各官에서 설치한 이른바 會外穀의 穀名은 다양하며, 義州府에서 설치한 還穀의 穀名은 무려 14종목에 달하여, 寧邊은 13종목, 楚山 9종목, 平壤은 8종목에 이르고, 三登熙川 龜城 鐵山 肇川은 각각 1종목이다. 各官會外穀의 규모는 최하가 熙川의 100石이고 보통 수 배 수 천石에 달하며 특히 平壤 義州 寧邊 江界는 모두 1萬石을 웃돌고 있다. 이같은 本道 會外穀의 총량은 86,865石이고, 이로 부터 얻는 利子穀의 歲收는 8,686石이다.

郡縣別로 설치한 還穀의 穀名은 그 耗穀으로 支辨하는 經費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거의 모든 郡縣에서 설치하고 있는 屑馬庫穀은 穀名이 표시하고 있는데로 그 利子收入으로 夫刷馬費를 지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軍需穀은 將士給料등 軍需財源을 학보하기 위한 것이고, 大同庫穀은 進上을 비롯한 上納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겨를이 없으므로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楚山府私庫穀(2,337石 4斗)의 실태만 분석해 본다.

그 가운데 忠義庫穀(594石 12斗)은 1割의 耕穀收入으로 武士 등의 優賞에 사용하는 것이고, 軍器庫穀(105石 13斗)의 耕穀은 監官 弓人의 紙類費에 사용되며, 官廳時存穀(436石 10斗)은 각종 官用物資의 購入費를 조달하기

50) 穀據便攷 4, 江原道條

〈表・18〉

平安道各官會外穀

正祖 21年

郡	縣	各邑會外穀貸出量 (盡 分 條)	各邑會外穀의 穀名
慈山	私庫穀	2,337石 4斗	忠義庫穀·軍器庫穀·官廳時存憲穀·補役庫穀·貢舉庫穀·補餉庫穀·贍學庫穀·科資庫穀·雇馬庫穀
(以下私庫穀省略)			
平壤	府	14,256.5	加立刷馬驅價穀·酬應庫穀·平易庫穀·管軍器穀·舟師庫穀·平賈庫穀·營作署庫穀·內西倉穀
江寧	西邊	2,175.6	雇馬庫穀·大各庫穀·私庫穀·將士頒料庫穀
	府	10,367.8	雇馬庫穀·大同庫穀·補民庫穀·給量庫穀·城操庫穀·軍器庫穀·修城庫穀·六一庫穀·勸武庫穀·軍需庫穀·放社庫穀·贍學庫穀·惠應庫穀
郭順	山川	248.11	養士庫穀·給料庫穀
	郡	3,518.2	雇馬庫穀·勸武庫穀·贍學庫穀·補濟庫穀·軍需庫穀·補役庫穀·訓練穀·廣濟庫穀·時潔庫穀
三成	和川	1,076.3	軍需庫穀·大同庫穀
三登	府	4,957.8	雇馬庫穀·大同庫穀·勸武庫穀·館舍庫穀·永賴庫穀
三价	登川	200.0	大同庫
祥博	原川	466.7	贍學庫穀
	郡	2,442.9	大同庫穀雇馬庫穀
江碧	江界	2,148.1	補民庫穀·軍需庫穀·補隸庫穀·贍學庫穀
	府	11,225.0	民庫穀·邊儲庫穀·別備庫穀·補施庫穀
	漁	5,795…	馬庫穀鐵·箭武士穀·百一院穀·振武庫穀·益蜀役庫穀·補役庫穀·贍學庫穀·糧餉庫穀
江義	東州	2,026.11	大同庫穀·軍需庫穀
	府	12,698.8	大同庫穀·府軍器庫穀·安民庫穀·察眉庫穀·常平庫穀·戊寅請得清穀造在條·社倉穀·東倉穀·吏奴庫穀·運餉庫穀·補餉庫穀·司倉別置穀·義武庫穀·防軍庫穀
昌城	府	2,512.2	百一院穀·軍器庫穀·修城庫穀·籍價庫穀·南北齊穀·水丁庫穀
宣州	川	352.13	獨鎮軍需庫穀·劖山城糧餉庫穀·料布庫穀
朔熙	州	2,765.10	雇馬庫穀·大館城穀
龜城	郡	100.0	軍需庫穀
渭潤	原山	142.0	城庫穀
	郡	1,346.1	軍器庫穀·邑私勅庫穀
肅嘉	山	271.3	大同庫
定殷	州	306.0	社庫穀
	牧	752.0	贍學庫穀·合需庫穀·縕庫穀·軍牢穀
龍	山	1,743.0	城役庫穀·軍需庫穀·餉土庫穀·養武庫穀
	岡	289.12	雇馬穀·社庫穀
	縣	345.10	戶口防給條穀
		各邑會外穀總計 86,865石 14斗	
		耗 穀 總 計 8,186石 5斗	

資料：穀摺便攷 卷 4,

위한 것이다. 그리고 補役庫穀(435石 5斗)의 耗穀을 府民의 각종 公課負擔(民役)을 支辨하는데 사용되며 貢舉庫穀(133石 3斗)의 耗穀은 軍廳班首 都常務 都訓導등의 紙料, 補餉庫穀(50石)의 耗穀은 把守 및 監官의 紙料, 賞學庫穀(65石)의 耗穀은 本府掌議의 衣服 및 接生의 食費支辨, 科資庫穀(35石)의 耗穀은 春秋祭祀費, 屢馬庫穀(147石 5斗)의 耗穀은 屢馬費의 支辨에 각각 사용된다. 正祖 21년 현재 이들 還穀의 총량이 2,337石 4斗이고 또한 元穀 金額을 貸出 徵利하는 盡分穀이다.

〈表·19〉는 英祖 45년(1769) 현재 全羅道各官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한 還穀의 穀名과 元穀量(貸出量) 및 耗穀의 用途를 밝힌 것이다. 표에 보듯이 자체의 還穀을 가진 郡縣은 南原等 10개郡縣이며 元穀의 총량은 1,491石 9斗이며, 모두가 전액을 貸出하는 盡分穀이다. 利子穀(耗穀)의 用途는 郡縣의 公役從事者에 대한 役價(보수), 各官軍器補修費 屢馬費, 困作時의 社會救濟費등의 公共經費를 支辨하는데 사용된다.

이 시기에 平安·全羅道 이외의 다른 도에서도 자체의 還穀을 설치한 군현이 많으나 설명을 생략한다. 그런데 地方財源確保를 위한 郡縣의 還穀이 가장 많이 설치된 地域이 平安道이다. 그 이유는 平安道는 地方財源으로 이 용되는 儲置米의 劃

〈表·19〉 全羅道各官還穀(盡分) 英祖 45年(1769)

各邑穀名	貸出量	耗穀의 用途
南原紙弊添補米	2,287石 2斗	紙所紙匠 등의 紙料
雲峰花水山米	662.5	碑閣守直將卒 등의 紙料 및 食糧
羅州各穀	6,218.1	私賑穀 5,892石 13斗의 耗穀은 本府扇紙·箋文紙 및 監色등 紙料에 사용 修繕穀 325石 2斗의 耗穀은 本府軍器修繕 및 城堞修補費에 사용
和順邑賑廳各穀	820.7	耗穀中 折半은 民庫에 移給하여 本縣公共經費를 支辨하고 折半은 備蓄하여 困年救濟費에 사용함
順天民庫社穀	2,845	本府民役(府民公共負擔)에 補用하고, 일부는 困年救濟費에 사용
光州私賑各穀	91.11	困年救濟費에 사용
萬頃益蜀役米	637.7	傳關路價·各營主人役價·各營門分定物品價등을 支辨함
全州履馬租	1,000.0	本府立馬廳의 經費에 補用함
咸平補賑租	303.0	困年救濟費(賑資)에 사용
參禮別備租	53.9	耗穀의 全量을 備蓄하여 非常時에 사용함
合計	先穀 14,919石 7斗	耗穀 1,491石 9斗

資料 : 穀據便攷 卷 3.

給量이 타도에 비하여 적고, 게다가 國防上의 需衡地이며 또한 朝淸兩國의 使臣이 왕래하는 西路를 끼고 있기 때문에 地方費의 支出이 많은데 있는 것이다. 다른 道에서는 1結에 평균 12斗의 大同米를 부과하였으나 平安道에는 大同法에 준하는 收米法을 실시하여 博川등 直路 13개군현에는 1結에 5斗, 中山 및 江邊 29개군 현에는 1結에 6斗씩을 부과하여 本道의 貢納價를 바치고, 地方費로서 積貯된 儲置米가 他道에 비하여 훨씬 적은 1萬 5千石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 地方財源의 많은 부분을 還穀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으로 믿는다.

이제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18~19세기에 있어서 官營高利貸로 전락한 還穀의 利子(耗穀)收入이 郡縣財政의 歲入構造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郡縣 이외의 地方軍東府 交通官府도 자체의 還穀을 설치하고 耗穀收入을 취득하고 있었다(後述).

5. 雜 稅

各官財政收入에는 기술한 土地收入·戶役·身役價·還耗收入 이외에 雜稅가 있다. 郡縣財源으로 이용된 雜稅에는 場稅 巫稅 海稅什一條 匠稅 店稅 寺稅 등이 있다. 그런데 郡縣마다 이러한 모든 雜稅收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일부의 雜稅를 안가진 郡縣도 있다. 또한 雜稅收入의 전액을 地方財源으로 積貯한 것도 아니며, 場稅 店稅 寺稅 海稅什一條를 제외한 雜稅는 中央官府에서도 収稅하였다.

〈表·19〉는 正祖 18년에 地方費의 총당을 위하여 鳳山郡등 7개郡縣에서 정세한 雜稅收入을 稅目·稅物別로 명시한 것이다. 표에 게재된 雜稅 가운데 店稅는 水鐵店 沙器店 瓮店 銀店등 각종 手工業場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工業稅로서 近代的租稅體系의 營業稅와 같은 것이고, 匠稅는 治匠 砂器匠 柳器匠 皮匠 席匠 鐵匠등 각종 手工業에 종사하는 匠人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身役價의 일종이다. 조선전기에 있어서 匠稅는 匠인이 公役에 종사하는 立役日을 제외한 나머지의 勞動日數에만 부과되었으나, 官匠制度가 평화한 후기에는 匠인의 立役義務가 없어지고 身役價로서의 匠稅만 부담하게 되었다. 場稅(場市稅)는 地方都市에 開市되는 定期市場에서 당시 生活必需品을 중심으로 하는 財貨를 賣買하는 複負商과 廉商人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이것은 모두 地方財源으로 積貯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자가 조목을 끄여는 것은 조선후기에 寺刹에 대한 寺稅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이다. 각 郡縣에서 정세하고 있는 寺稅의 稅物은 寺刹手工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종합해 보면 紙類 신발류 새끼 강주리 등의 現物로 되어 있다. 經國大典 兵典 復戶條에,

<表 19>

各官諸稅收入表

正祖 18年(1794)

鳳山郡	店稅 中鼎 6坐 } 水鐵店稅 大鼎 6坐 }	河東府	海稅錢什一條 錢 57兩 3錢 9分 場稅 錢 707兩 (進上價添製) 匠稅 平涼子 3竹 6立 柳箒 30部 } 該當匠人納稅 馬鐵 60部 店稅 水鐵 250斤 } 各店納稅 白沙器 8盛床 寺稅 壯紙 3束 雙溪寺納稅 斤
	沙器 200竹 沙器店稅春秋分納		
	土瓮 6坐 } 瓮店稅春秋分納		
	土盆 30升 }		
	匠稅 生鐵匠 30名 每名 1兩 1錢合 36兩		
	鑄匠 24名 每名 8錢合 19兩 2錢		
	豆錫匠 18名 每名 豆錫 1斤 合 18		
	皮匠 5名 每名 鐵鐵 1斤 合 5斤		
	網巾匠 18名 每名 網巾 4立合 72		
	立		
晉州牧	皮匠 7名 每名 狗皮 12令合 84令	晋州牧	巫稅 錢 43兩 4錢 海稅錢什一條 錢 48兩 7錢 6分 場稅 錢 76兩 4錢 4分 匠稅 馬鐵 72部 驚飾 12部 } 當該匠人 柳箒 48部 壓器 360坐 } 納稅 蘆簾匠 30名 每名 2立 合 60效 3,300軍 (各站經費補用)
	柳器匠 5名 每名 12部 合 60部		
	蘆簾匠 30名 每名 2立 合 60效		
	場稅		寺稅 皮紙 12束 細繩 12斤 } 各寺納稅 草鞋 36部
	巫稅 巫女 8名 每名 5軍 合 40軍		
海州牧	場稅 60兩 (各站經費補用)	永川郡	場稅 錢 869兩 6錢 (雇馬價製用)
	巫稅 巫女 5名 每名 5兩 合 25兩 (京司上納雇價補用)		匠稅 鼎 1坐 } 各店納稅 馬鐵 7部 堯席 155立 花紋面席 10立 花文登每席 10立 花文單席 } 廣匠 10立 花文方席 10立 花文案息 } 納稅 10立
	匠稅 正鐵 60斤 馬鐵 30斗 治匠納稅出 稅		寺稅 皮紙 200束 油紙 8束 草鞋 10竹 靴鞋 2竹 } 寺稅僧徒 細繩 4,000把 箱子 10部 簡 10部 } 納稅
	小瓮 12개 土器 12竹 盆匠納稅		
	沙鉢 30竹 6개 沙器匠納稅		
	寺稅 葛鞋 24竹		
	中繩 3,20把 } 神光寺僧徒納稅 細繩 4,000把 (各使行(對清)用)		
	場稅 385兩 (雇馬費補用)		
	匠稅 柳器 24部 柳器匠納稅(出稅)		
	鼻鞋 24部 狗皮 24張 皮匠納稅		
松縣	錢 20軍 斗子 匠人納稅	天安郡	場稅 156兩 1錢 7分 (2개 市場)
	錢 10兩 水鐵店納稅		店稅 食鼎 4坐 } 店人納稅
	寺稅 麻鞋 6竹 草鞋 2竹 4개 } 寺稅僧 大繩 600把 徒處納稅		匠稅 馬鐵 每月 3部 治匠納稅
	中繩 600把 } 各寺僧徒 細繩 600把 納稅		寺稅 壯油紙 每月 1束 小油紙 每月 1束 } 納稅
	石革 6斗 }		皮紙 每月 2束 細繩 每月 300把 } 各寺僧徒 小索 每月 45把 納稅
			草鞋 每月 2竹 }

凡寺刹 貢賦外復役

이러한 규정과 世祖 3年 3月에 禮曹에 내린 傳旨에

寺社 貢賦外雜役一除⁵¹⁾

과한 것으로 알 수 있드시 조선전기에 寺院에 대해서는 貢賦의 役만 부과하고 다른 稅役은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成宗 19年 諸道 觀察使에 내린 議書에,

民之逃避徭役者 盡歸編流⁵²⁾

라한 것과 世宗 24年 議政府의 啓에

僧徒之數 半於農民 無賦無役 安居廣廈 其所衣食 皆出於農家 虫國害民 無甚於此⁵³⁾

타한 것과 같이 조선전기에 僧侶들은 身役 廏役을 비롯한 모든 公役負擔에서 免除되고 있었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僧侶에 대해 寺院手工業品을 現物로 徵稅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조의 일관된 崇儒抑佛政策의 추진으로 후기에는 佛教勢力이 더욱 약화되었고 또한 財政難이 국심해진데 기인하는 것이다. 地方財源으로 회급된 海稅什一條란 英祖 26년에 均役法을 실시할 때 改革한 海稅(漁鹽船稅)規定에 均役廳에 바치는 海稅가운데 1/10을 各官에 회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雜稅가운데 場稅 海稅什一條 및 巫稅는 錢納으로 되어 있고, 匠稅 店稅寺稅는 대부분이 物納으로 되어 있다.

IV. 結 言

이제까지 地方行政官府의 收入을 種目別로 土地收入(結役) 戶役·身役·還耗·雜稅로 분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年代의으로는 주로 18세기 말의 各官 財政實態를 분석하였다. 本項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種目別收入을 종합한 各官 歲入構造를 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結言에 대신한다.

<表·20>의 各官 歲入表 I은 18세기 말에 있어서 結役(土地收入) 戶役 身役 雜稅 耗穀으로 구분되는 各官 歲入을 통합하여 종목별로 계재한 것이다.

첫째로 土地收入 내지 結役收入을 살펴보면, 조선전기에 있어서 土地收入에는 官屯田과 같은 直營地耕作收入과 衙祿田·公須田 火田과 같은 民田의 佃戶(農民)

51) 世祖實錄 卷 7, 3年 3月 丙戌

52) 成宗實錄 卷 216, 19年 5月 戊寅

53) 同書 卷 295, 24年 2月 丙午

經營地에 대한 田稅(結役) 收入이 있었으나, 후기에는 官屯田의 經營方式이 小作制로 전환됨에 따라 郡縣의 直營地收入이 없어지게 되고, 衛祿·公須田의 田稅 및 大同儲置米와 火田稅의 劃給등 結役收入만 있게 되었다. 각 官 直營地 收入이 없어지게 된 요인은 조선후기에 民田에 있어서 分半小作制가 일반화되고 또한 各營·衛門屯田과 宮房田이 小作制로 경영되는 社會慣行에 따라 官屯田의 經營樣式도 전기적인 直營制를 止揚하고 小作制經營으로 전진적 발전을 한 데 있다. 그리하여 官屯田에는 收穫量의 약 1/2을 地代(屯稅)로 수취하는 分半小作制(賭租·賭錢)가 채택되었다. 이같은 官屯田에는 전기와 같이 국가에 바치는 田稅와 大同이 면제되었으나, 衛祿田과 公須田에는 1結에 4斗 또는 6斗의 田稅만 면제하고 大同稅는 부과하였다.

이 결과 조선후기에 있어서 各官 結役收入으로는 衛祿·公須田의 田稅, 官屯田의 賭租·錢(廣義의 結役) 火田稅, 民田에 穀物 錢貨 또는 雜物을 부과하는 科外雜稅가 있고, 역시 結役에 속하는 大同稅의 30~40%를 地方財源으로 각 官에 移給하는 儲置米가 있다.

둘째로 各官 戸役으로는 正規의 地方稅인 鄉貢과 科外雜稅가 있다. 이를 戸役은 錢貨 또는 現物로 과징되고 있으며, 扶餘縣과 같이 雉鷄柴炭의 鄉貢이 없는 郡縣은 이를 結役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각官에서 戸役으로 징세하고 있는 科外雜稅도 稅目 收稅物 用途 規模에 있어서 차이가 심하다.

세째로 各官 身役은 良役에 속하는 軍保 또는 保人과 奴婢貢을 비롯한 定役(身貢)으로 되어 있고, 稅物은 주로 錢貨로 되어 있다.

넷째로 雜稅의 경우 場稅와 海稅什一條는 錢貨로 징수되고 있으나 이밖에 匠稅店稅寺稅 등은 稅物이 주로 現物로 되어 있다.

다섯째 還穀의 경우 조선후기에 각官은 자체의 還穀을 설치하여 상당한 耗穀收入을 획득하고 있으나, 자체의 환곡을 안가진 일부 군현도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京司會付穀은 모든 郡縣에서 敘散(貸出 還收)되고 있으며, 각 官에 分與(支給)되는 京司穀의 耗穀은 기술한 바와 같이 편균 100石으로 추정된다.

<表·21>의 각 官歲入表Ⅱ는 <表·20>에 의거하여 郡縣別 歲入規模 稅役別 稅額과 그 比率 등을 파악해 본 것이다. 표의 각 官 歲入을 쌀을 중심으로 하는 穀物과 錢貨 및 手工藥品 雉鷄柴炭水丁 등의 雜物의 세 가지 範疇로 분류하여, 이들을 당시의 時價에 따라 쌀로換算하였다. 그런데 錢貨는 6兩을 쌀 1石으로換算하였으나, 雜物은 評價基準이 없고 또한 그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쌀로換算하지 않았다.

표에 기재된 7개관만 보더라도 18세기 말기의 각 官歲入規模는 波州牧의 905石 4斗가 가장 적고 나머지 6개관은 모두 1천石을 훨씬 초과하여 成川縣은 4천 5백여石, 晉州牧은 3천 5백여Stone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각 官歲入規模는 적은 경우 1천Stone 안팎에서 많은 경우 3~4천Stone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표에 추계한 각 官歲入에는 비록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雜物收入이 計上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各官身役과 雜稅 가운데 場市稅와 海稅什一條 및 巫稅는 대부분이 錢納이고 還耗 匠稅 店稅 寺稅는 그 대부분이 각종 穀物 또는 雜物로 된 現物稅이다. 그리고 結役과 戶役의 稅物은 穀物과 錢貨가 주종을 이루고 그 밖에 약간의 雜物로 되어 있다. 표의 7개관 가운데 揚州 波州 瑞興 扶餘 등 4개관은 穀物收入의 비중이 높고 나머지 3개관은 錢貨收入의 비중이 높다. 晉州牧의 경우 雜物을 제외한 總歲入 3천 5백여Stone 가운데 錢納의 비율이 62.5%에 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관찰할 때 18세기 말기에 각 官歲入에 있어서 錢納度의 비율이 평균 40%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中央財政에 있어서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이같은 近代指向的變化는 이 시기에 있어 貨幣商品經濟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다.

稅役別로 본 岁入에 있어서는 晉州牧의 경우 戶役이 總歲入의 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6개관은 結役의 비중이 높다. 전국적으로도 역시 結役이 높다. 이것은 時代의 推移에 따라 전기적 收取方法인 戶役이 稅制改革을 통하여 차츰 감소하는 대신에 結役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해 간데 기인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조선전기에 戶役으로 부과하던 徭役 貢物 進上 雜稅 등 각종의 封建的 稅役이 大同法 실시로 말미암아 結役으로 轉換하여 土地(田結)에 부과됨에 따라 結役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던 것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사실은 조선후기의 각 官歲入에는 전기에 없었던 身役 및 還耗收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의 각 官歲入에는 還耗收入이 거의 없었고 또한 身役도 布·錢 또는 穀物로 바치는 物納이 아니고, 義務的인 無給立役으로 役丁의 勞動力を 직접支配하였다. 환은하면 軍役 定役의 身役負擔者は 각 官에서 필요로하는 所定의 勞動력을 직접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전기적 收取方式에 입각한 身役一勞動力의 지배는 隱蔽된 收入이지 顯在的 收入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전기적인 無償立役제에서 紬價雇立制로 전진적 변화를 이루함에 따라 物納化된 身役이 顯在的 收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顯在化된 身役收入이 立役者(雇立者)의 紬料(雇價) 등 보수에만 사용되지 않고 耗穀과 더불어 다른 여러가지 經費의 財源으로 사용되고, 혹은 奸吏의 蕩財手段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還穀과 더불어 身

〈表・20〉

各官歲入表1

正祖 21年

揚 州 牧(京畿道)

土地收入(結役)

大同米移給 官需米 120石 使客支供米 150石 霹祿米 20石 中軍料米 14石 劃給軍 248石
 計 552石

官屯田稅 各穀 20石 12斗

火田稅 太 113石 7斗

雜稅(結役) 清蜜 52斗 2升 真油 60斗 9升 法油 34斗 8升
 黃蠟 28斤 2兩 赤豆弓 雜穀 78石
 錢 1,668兩 4錢(每結 6兩 5錢~12兩)(實結 145結)

戶役 錢 861兩 8錢 直麥 22石 10斗

生栗 1石 12斗

柴 10,062炭 72石 2斗 5升 鷄 567首 氷丁 2,212張
 白紙 114束 14張 生麻 122召音 黃栢皮 8斤

雜稅 香木土黃

店稅 行擔 48部 柳器店 4處納稅
 瓶 516件 砂器店 43處納稅

雜稅 馬鐵 12部 治匠 2名 納稅

身役價 各色軍官·軍保錢 316兩

// 米 315石 9斗

(立番軍官給料·副食費·軍服·軍器修補)

鄉校·書院募軍 米 30石

奴婢貢 錢 9兩(奴 5口各 1兩, 婢 8口 各各 5錢)

坡 州 郡(京畿道)

土地收入(結役)

大同米移給 官需米 120石 使客支供米 155石
 霹祿米 20石 別劃給米 30石 中軍料米 10石 6斗 計 335石 6斗

官屯田稅租(皮穀) 12石 2斗

衙祿公須田稅 租(皮穀) 342石 5斗

(65結 每結 5石 4斗 收租)

詳定錢 1,292兩 5錢 8分

(517結 2貧 9束 每結 2兩 5錢收稅)(官用雜物購入費支辦)

戶役 租 218兩 13斗(每戶 1斗) 米 21石 8斗 3升(每戶 1升)

進上生蟹錢 150兩 氷丁 3,000張(每戶 3張)(陵寢祭享吳進上時需用)

枳炬 1,000張(每戶 1張) 盖草 1,000編(每戶 1編)

身役 各色軍官錢 540兩(每人 2兩)

鄉校募入錢 67兩 2錢(每名 1兩 2錢)

奴婢貢錢 31兩 6錢(奴 1口 2兩婢 1口 3錢)

雜稅 匠稅: 行擔 60部(柳器匠) 馬鐵 36部(治匠) 弓矢人 錢 40兩(每人 2兩)

店稅：陶瓶 120個

還耗 軍餉耗米 700石 7斗 (元穀米 704石 14斗) (將士支放)

防營各穀耗穀 153石 5斗 (元穀 1,533石 11斗)

成 川 縣(平安道)

土地收入大同米移給

(結役) 衛祿田稅 米 28石 8斗 太 7石 4斗 6升

官屯田稅 錢 77兩 9錢 4分

火田稅 { 米 998石 11斗 4升
雜穀 380石 2斗 3升

科外雜稅 錢 4,585兩

雜穀 98石 12斗 7升

白楮 383斤 1兩 9錢 7分

生麻 4,585斤

戶役 扱馬錢 1,251兩 7錢

白楮價錢 758兩 4錢

遠方柴炭代錢 1,069兩 4錢

生鷄 5,499首 生雉 1,041首 鷄卵 5,499枚

柴 31,424束 穀草 13,758束

身役 軍官 吊 각종 身役 錢 4,818兩 (每名 2兩)

雜稅 場稅 錢 820兩

店稅 錢 240兩 (銀店)

船稅 錢 210兩 (海稅什一條)

通稅 錢 158兩

雜稅 { 馬鐵 60部 (冶匠)
正鐵 60斤 (冶匠)

還耗 耗 495石 11斗 (元穀 4,957石 8斗) (成川私穀)

永 川 郡(慶尚道)

土地收入 (結役)

大同米移給 官需米 300石, 使客支供米 25石 衛祿・公須錢 150兩

官屯田稅 租 41石 8斗

火田稅 錢 342兩 3錢 5分

雜稅 草夫錢 1,984兩

戶役 雉鷄 1,236首 燒木 13,470丹 炭 40石 薤草 2,400束

皮栢子 40石 (進上 吊 官用)

烟戶錢 112兩 5錢 (藥材進上)

還耗 元錢：記付錢 800兩 搞砧錢 250兩

履馬錢 2,000兩 氷丁錢 300兩

(元錢計 3,350兩 利子 335兩)

身役 軍官・藥漢錢 792兩 8錢

雜稅	店稅 鼎 1坐，馬鐵 7部 匠稅 斗香 席子 95立 花文案息 10部 (席子匠納稅) 場稅 150兩 寺稅 皮紙 200束 海紙 8束 草鞋 10竹 麻鞋 2竹 箱子 10部 瓠 10部 (各寺僧徒納稅)
----	---

晋 州 牧(慶尚道)

土地收入(結役)

戶役	大同米移給 官需米 390石 使客支供米 50石 衙祿米 18石 7斗 8升 4合 太 5石 9斗 4升 2合 4夕 計米 458石 7斗 8升 4合, 太 5石 9斗 4升 2合 4夕 官屯田稅 太 2石 祖 29石 火田稅 錢 596兩 2錢 5分 般材曳運價米 200石 補民庫租 497石 5斗 漕倉傳關米 50石 同 牵 497石 5斗 人口錢 1,802兩 3錢 (每式年收稅) 雉鷄錢 497兩 8錢 5分 柴炭草錢 1,764兩 6錢 8分 雜種價錢 1,114兩 3錢 4分 進上節扇竹添補錢 628兩 1錢 1分 雜役錢 4,594兩 3錢 9分 屢馬喂養錢 200兩 補陳錢 120兩 蔘價添補錢 961兩 松板 55立 松烟 7斤 12兩 五味子 1斗 5升 軍官除番錢 240兩 (軍官給料 及 官用) 別軍官除番稅米 16石 各種軍保 錢 1,430兩 租 47石
雜稅	場稅錢 76兩 巫稅錢 43兩 4錢 海稅錢什一條 48兩 7錢 6分 匠稅 馬鐵 72部 柳箒 48部 鹿節 12部 各種甕器 360坐 (各種匠人納稅) 店稅 白砂器 200竹 (砂器店納稅) 寺稅 皮紙 12束 細繩 12斤 草鞋 36部 (各寺納稅)

瑞 興 府(黃海道)

土地收入 (結稅)	大同米移給 官需米 315石 使客支供米 200石 衙祿田稅 41兩 1錢 2分 官屯田稅 粟 36石 1斗 5升 火田稅 粟 1,216石 12斗
戶役	生鷄 2,147首 雞卵 2,147枚 柴 13,653束 小木 1,260束 穀草 10,735束 灶煇 11,512柄
身役	除番軍官錢 1,186兩 (雜物購入費) 鄉校募入 24兩 (祭享費) (85名 每名 1兩 6錢) 大峴山城募入 (57名 每名 2錢) 114兩 (軍器修理費)

雜稅	場稅錢 1,026兩 (乾魚物 果實等 購入)
店稅	鼎 2坐 爐口 2坐 驥斗 2升 (水鐵店納稅) 沙器 16竹 (沙器店納稅)
匠稅	柳古理 4部 柳行擔 4部 柳甫笥 2部 (柳器匠納稅)
寺稅	草鞋 24竹 (寺院納稅)

扶 餘 縣(忠清道)

土地收入

(結役)	官需米 200石 油清價米 36石 10斗
大同米移給	公事紙價米 10石 使客支供米 30石 霹祿米 23石 10斗 3升 太 5石 13斗 7升 雜役詳定米 450石 (新結所出米) 官屯田稅 祖 25石 2斗 6升, 太 2石 1斗 木花 115斤 10兩 火棗田稅 123兩 3錢 1分 (每結 5兩 5錢)
	刷馬價錢 627兩 5錢, 年分文書紙價 每結白紙 1張
戶役	戶蟹 1,635개, 雉羽 1,000개, 民轉錢 160兩 (臨時稅) 式年成籍紙價·役價米 64石 10斗 租 140石 7斗 (臨時稅)
身役	軍官除番錢 120兩, 馬兵保錢 86兩, 軍器保 등 각종 保錢 199兩, 歲抄時軍保每名 1兩, 式年改都案費 264兩 (臨時稅) 10年 1次大都案費 223兩 8錢 5分 (臨時稅)
雜稅	場稅錢 396兩 8錢 (使客接待費) 寺稅 大索 360把 細繩 600把 草鞋 36部 店稅 食鼎 2坐, 正鐵 14斤, 鎔鐵 14斤 砂器 21竹 土器 214개 (各店納稅) 匠稅 柳器 36部 (柳器匠) 馬鐵 24部 (冶匠)

資料 : 賦役實據, 卷 1, 3, 6, 11, 穀摺便攷 卷 4.

役收奪의 苛酷性이 빛어졌던 것이다. 아놓든 正祖 20년께 대다수 郡縣의 身役收入이 10%를 웃도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各官 還耗收入도 10%를 웃도는 郡縣이 상당수가 있으며, 波州牧의 경우는 그것이 42.5%에 이르고 있다. 조선후기에 財政危機가 擴大深化됨에 따라 中央財政과 地方財政의 耗穀依存度가 높아져가는 대목에서 還政의 紊亂과 이를 통한 農民收奪이 苛酷해져 갔다.

各官의 科外雜稅는 이 시기에 戶役 結役 또는 身役의 형태로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다. 田과 畑을 막론하고 1結에 本色貢納價의 수 배에 달하는 大同米 12斗의 높은 稅率을 적용하게 된 주된 요인의 하나는 당시에 各官에서 거의 無定限의 으로 과징하고 있던 科外雜稅를 모두 폐지하는데 있었다. 大同稅의 30~40%를 各官財源으로 회급한 이유도 科外雜稅를 폐지하는데 수반하는 財源不足을 보충해 주는데 있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7세기초로 부터 各道別로 大同法이 실시되고 열마자지 안아서 各官에서는 戶役 結役 身役등 여러가지 형태의 科外雜稅가 再現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開港期에 이르기까지 年增歲加해 갔다.

〈表・2D〉

各官歲入表Ⅱ

正祖 21年

揚 州 牧					
收入種目	Ⓐ 穀 物	Ⓑ 錢 (貨 幣)	Ⓒ 現 (雜 物 物)	Ⓓ A+B	Ⓔ (%) 稅役別 收入比率
① 結 役	米 552石 太 20石 7斗 雜穀 98石 12斗	1,668兩 4錢	油蜜類		
米換算額	611石 9斗 5升	278石		889石 9斗 5升	62.3
② 戶 役	22石 10斗	86兩 8錢	柴炭鷄冰丁等		
米換算額	22石 10斗	14石 5斗		37石	2.6
③ 身 役	米 345石 9斗	325兩			
米換算額	345石 9斗	54石 2斗 2升		399石 11斗 2升	28.0
④ 雜 稅				
⑤ 還 耗	京司會付穀耗米 100石			100石	7.1
計	米 1,079石 13 斗 5升(75.6%)	米 346石 7斗 2 升(24.4%)		1,427石 5斗 7升	100
波 州 牧					
① 結 役	米 335石 6斗 祖 354石 7斗	錢 1,292兩 5錢 8分			
米換算額	689石 13斗	215石 6斗		905石 4斗	42.5
② 戶 役	米 21石 8斗 3升 祖 218石 13斗	150兩	冰丁・蓋草・粗 炬等		
米換算額	130石 14斗 5升	25石		155石 14斗 5升	7.3
③ 身 役		638兩 8錢			
米換算額		106石 6斗		106石 6斗	5.0
④ 雜 稅		40兩	行擔・馬鐵・陶瓶等		
米換算額		6石 10斗		6石 10斗	0.3
⑤ 還 耗	米 853石 12斗 京司會付穀耗米 100石				
米換算額	953石 12斗			953石 12斗	44.9
計	米 1,774石 9斗 5升(83.3%)	米 354石 7斗 (16.7%)		2,129石 1斗 5升	100
成 川 縣					
① 結 役	米 1,201石 4斗 4升 雜穀 379石	4,662兩 9錢 4分	白楮・生麻		

米換算額	1,580石 4斗 4升	777石 10斗		2,357石 14斗 4升	52.2
② 戸 役		3,079兩 5錢	柴・草・鶏卵生鶏		
米換算額		513石 8斗		513石 8斗	11.1
③ 身 役		4,818兩			
米換算額		803石		803石	17.8
④ 雜 穀		1,428兩	馬鐵・正鐵		
米換算額		238石		238石	5.8
⑤ 還 耗	495石 11斗 京司會付穀耗米 100石				
米換算額	595石 11斗			595石 11斗	13.1
計	2,176石 4升 (48.2%)	2,332石 3斗 (51.8%)		4,508石 4斗	

永 川 郡

① 結 役	米 325石 租 41石 8斗	2,476兩 3錢 5分			
米換算額	346石 5升	412石 10斗		758石 10斗 5升	68.8
② 戸 役		112兩 5錢	雉鷄柴炭薰草等		
米換算額		18石 10斗		18石 10斗	1.6
③ 身 役		792兩 8錢			
米換算額		132石 2斗 5升		132石 2斗 5升	12.0
④ 雜 稅		150兩	席子・紙類・鐵物等		
米換算額		25石		25石	2.4
⑤ 還 耗	京司會付穀耗米 100石	335兩			
	100石	67石		167石	15.2
計	米 446石 5升 (40.6%)	米 655石 7斗 5升(59.4%)		1,101石 8斗	100

晋 州 牧

① 結 役	米 458石 7斗 8 升 4合 太 7石 9斗 4升 2合 4夕 · 29 ·	596兩 2錢 5分			
米換算額	476石 12斗 3合 2夕	99石 5斗		576石 2斗 3合 2夕	16.4

② 戸 役	米 250石 祖 497石 5斗 年 497石 5斗	10,807兩 6錢 8分	松板・松烟・五味子		
米換算額	707石 5斗	1,801石 3斗 5升		2,508石 8斗 5升	70.0
③ 身 役	米 16石 祖 47石	1,670兩			
米換算額	39石 7斗 5升	278石 5斗		317石 12斗 5升	8,9
④ 雜 稅		168兩 1錢 6分 28石	鐵物・紙類・沙器等	28石	0.8
⑤ 還 耗	京司會付穀耗米 100石			100石	2.9
計	米 1,323石 9斗 8升 2夕 (37.5%)	米 2,206石 13斗 5升 (62.5%)		3,530石 8斗 3合 2夕	100

瑞 興 府

① 結 役	米 515石 粟等 1,252 石 13斗 5升	41兩 1錢 2分			
米換算額	1,767石 13斗 5升	6石 9斗		1,774石 7斗 5升	77.0
② 戸 役			柴鶴穀草炬煥等		0
③ 身 役		1,324兩			
米換算額		260石 10斗		260石 10斗	11.3
④ 雜 稅		1,026兩	鐵物・砂器等		
		167石 10斗		167石 10斗	7.3
⑤ 還 耗	京司會付穀耗米 100石			100石	4.4
計	米 1,867石 13斗 5升 (81.2%)	米 434石 14斗 (18.8%)		2,302石 12斗 5升	100

扶 餘 縣

① 結 役	米 760石 5斗 3升 太 7石 14斗 7升 祖 25石 2斗 6升	650兩 8錢 1分			
	776石 5斗 3升	108石 4斗 5升		884石 9斗 8升	61.7
② 戸 役	米 64石 10斗 祖 140石 7斗	160兩	雉羽等		
米換算額	134石 13斗 5升	26石 10斗		161石 8斗 5升	11.3
③ 身 役		1,324兩			
米換算額		220石 10斗		220石 10斗	15.3
④ 雜 稅		396兩 8錢	鐵物・砂器・柳器 草鞋・細繩等		
		66石 2斗		66石 2斗	4.7
⑤ 還 耗	京司會付穀耗米 100石			100石	7.0
計	米 1,011石 3斗 8升 (70.6%)	米 421石 11斗 5升 (29.4%)		1,433石 1斗 3升	100